

韓國保險市場의 構造分析

吳 萬 植*

.....<目 次>.....

I. 序 論	2. 地域別構造
1. 研究의 目的	3. 種目別構造
II.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構造	V. 損害保險市場의 構造
1. 保險種類別構造	1. 機關別構造
2. 生・損保의 構造	2. 地域別構造
III. 保險成長率의 構造	3. 種目別構造
1. 保險成長率과 經濟成長率의 構造	VI. 社會保險市場의 構造
2. 保險種類別成長率의 構造	1. 機關別構造
3. 保險種目別成長率의 構造	2. 業種別・階層別構造
IV. 生命保險市場의 構造	3. 種目別構造
1. 加入方法에 의한 構造	VII. 結 論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保險의 大衆化 또는 保險市場의 擴大乃至 保險市場構造의 近代化는 現在 우리나라 保險業界가 解決하여야 할 當面課題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繼續努力하여야 할 課題이기도 하다.

그러나 「保險의 大衆化 또는 保險市場構造의 近代化는 어디까지나 被保險者團體(所謂, 危險團體)의 構成이 職業的 階層的 僅 地域的으로 서로 均衡을 維持하면서 擴大되어 나가는 것을 意味하며 一國의 保險市場의 어려한 特殊條件에 의한 單純한 保險契約高의 伸長이나 收入保險料의 增加와 반드시 一致한다고는 볼 수 없다.」⁽¹⁾ 이것이 바로 現在의 韓國保險市場의 現實인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의 目的是 우리나라가 保險市場을 우리나라 保險의 大衆화와 保險市場構造의 近代化에 將與시키기 위해서 于先 우리나라 保險市場構造를 分析하고 이를 外國의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教授

(1) 金振穆, 「保險大衆化에 대한 一考」, 『保險研究』, 第1卷 第2號, pp. 12-13.

保險市場構造와 比較 檢討함으로써 韓國의 保險市場構造의 特色을 正確히 把握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保險市場構造를 改善하여 보려는 데 있다.

2. 研究의 方法 및 内容

本研究를 함께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韓國의 保險市場構造를 種目別로 分析하는 데 重點을 두었으며 또 이 保險의 種目別分析을 하는데 있어서도 趨勢分析과 現況分析과의 두側面으로부터 接近을 試圖하였을 뿐만 아니라 外國 保險市場構造와의 比較 檢討를 통하여 우리나라 保險市場構造의 特色을 밝히려는 데 두었다.

II의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構造」分析에 있어서는 韓國의 保險市場을 生命保險市場과 損害保險市場, 社會保險市場의 세으로 分類하여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構造를 全體的으로 把握하여 보려고 하였고 여기서一步前進하여 保險市場에서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生保市場과 損保市場의 構造를 重點的으로 取扱하였으며 이를 다시 外國과의 事例와 比較 檢討함으로써 우리나라의 保險市場의 特色을 明白히 하여 보려고 努力하였다.

III의 「保險成長率의 構造」分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保險成長率을 各種別로 相互 比較할 뿐만 아니라 그의 要因分析을 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外國의 그것과 比較 檢討함으로써 우리나라 保險市場構造의 成長速度와 發展方向을 搜索하여 보려고 하였다.

IV의 「生命保險市場의 構造」分析에 있어서는 韓國의 生命保險市場을 첫째, 加入方法에 의한 構造 둘째, 地域別構造 세째, 種目別構造의 세 가지側面으로부터 觀察하고 이를 다시 民營保險, 公營保險, 紐合保險別로 각각 나누어 分析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外國의 그것과 比較 檢討함으로써 우리나라 生命保險市場構造의 特色을 明白히 하여 보려고 하였다.

V의 「損害保險市場의 構造」分析에 있어서도 韓國의 損害保險市場을 첫째, 機關別構造 둘째, 地域別構造 세째, 種目別構造로 나누어 觀察하고 이를 다시 民營保險과 公營保險 및 社會保險別로 각각 나누어 分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또다시 外國의 그것과 比較 檢討함으로써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의 特色을 明白히 하려고 하였다.

VI의 「社會保險市場의 構造」分析에 있어서도 韩國의 社會保險市場을 機關別, 業種別階層別, 種目別로 觀察하고 이를 다시 外國의 그것과 比較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나라 保險市場構造의 改善方向을 提示하여 보려고 努力하였다.

II.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構造

1. 保險種類別構造

우리나라의 保險市場은 大體的으로 生命保險市場, 損害保險市場, 社會保險市場으로 均等하게 配分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 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保險料收入을 中心으로 볼 때 生保市場은 全體 保險市場에서 約 35.1%를 占하여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損保市場으로서 約 33.8%를 占하여 第 2 位, 社保市場은 31.1%를 占하여 第 3 位를 차지하고 있다. 上述한 바와도 같이 우리나라 保險市場은 生命・損害・社會 세 保險市場으로 均等하게 配分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를 更的으로 考察하면 1961 年度에 있어서는 社會保險市場이 우리나라 全體의 保險市場에서 約 38.0%를 占하여 第 1 位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損害保險市場으로서 33.2%로 第 2 位, 生命保險市場은 約 28.8%로서 第 3 位를 占하고 있었다. 그리던 것이 1965 年度에 오면 社會保險市場은 約 30.5%를 占하게 되어 第 3 位로 떨어지고 損害保險市場은 約 30.7%를 占하여 第 2 位를 固守하고 있고 生命保險市場은 約 38.8%를 占하여 第 1 位로 登場하게 된다.

1965 年度 以後에 오면 위와 같은 傾向이 앞으로도 繼續되어 1970 年度에 오면 生命保險市場이 約 35.1%, 損害保險市場이 約 33.8%, 社會保險市場이 約 31.1%로서 우리나라 保險市場이 生命・損害・社會保險의 세 市場으로 均等하게 配分되게끔 된다.

다음 各 保險市場別로 이를 觀察하면 먼저 生命保險市場은 1961 年度에는 全體 우리나라 保險市場에서 約 28.8% 程度밖에 占함에 不過하였으나 1965 年度에는 約 38.8%로 增加하였다가 그 後 減少하여 1970 年度에는 約 35.1%까지 減少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生命保險市場이 全體保險市場에서 占하는 比重은 大體的으로 큰 變動 없이 安定的인 位置를 지켜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은 1961 年度에는 全體 保險市場에서 約 33.2%를 占하였으나 1965 年度에 오면 約 30.7%로 下落하였다가 그 後 增加하여 1970 年度에 오면 約 33.8%로 되어 第 2 位를 固守하고 있으며 이것을 生命保險市場의 경우와 比較하여 볼 때 生保市場은 1961 年度에는 全體 保險市場에서 約 28.8%를 占하던 것이 1970 年度에는 約 35.1%로 크게 增加하고 있는데 反해서 損保市場의 경우는 1961 年의 約 33.2%에서 1970 年度에는 約 33.8%로 約 0.6% 밖에 增加하고 있지 못함을 發見할 수 있다.

이에 反해서 社會保險市場은 1961 年度에는 全體 保險市場에서 約 38.0%를 占하여 第

1位를 차지하던 것이 1965 年度에는 約 30.5%로 떨어졌다가 1970 年度에 오면 約 31.1%로 다시 增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社會保險市場은 1961 年度의 約 38.0%에서 1970 年度에는 이것이 31.1%로 下落하여 우리나라 社會保險市場은 1961 年度의 第 1 位에서 1970 年度에는 第 3 位로 떨어지고 있다.

〈表 II-1〉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構造 (單位: 百萬 원)

區分	生命保險		損害保險		社會保險		合計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年度								
1961	452.7	28.8%	521.0	33.2%	595.0	38.0%	1,568.7	100.0
1962	1,170.8	41.6	665.0	23.7	976.0	34.7	2,811.8	100.0
1963	1,490.2	36.9	863.8	21.4	1,677.3	41.7	4,031.3	100.0
1964	1,667.8	34.0	1,287.5	25.7	1,949.8	40.3	4,905.1	100.0
1965	2,615.9	38.8	2,064.7	30.7	2,049.8	30.5	6,730.4	100.0
1966	3,572.7	33.8	4,543.6	43.1	2,429.0	23.1	10,545.3	100.0
1967	5,456.7	37.0	6,114.7	41.5	3,172.0	21.5	14,743.4	100.0
1968	8,219.8	37.6	8,443.5	38.7	5,182.8	23.7	21,846.1	100.0
1969	11,490.2	37.6	11,442.4	37.5	7,570.0	25.2	30,502.6	100.0
1970	14,887.0	35.1	14,300.0	33.8	13,193.2	31.1	42,340.2	100.0

註：1) 生命保險은 民營生命保險과 國民生命保險의 保險料收入입니다.

2) 損害保険은 保険료收入입니다.

3) 社會保險은 災害保險, 軍人保險, 醫療保險, 公務員年金의 合計額이,

國民生壽保險費，年度來現在維持契約保險料率。

產災保險은 年度別收納額이,

個人保險是 保險料收入(個人負擔+國庫負擔)額。;

續費保險是 年度屬收入實績

公務員年金은 年度別歲入額이,

在《新民子集》卷一有此句。

2. 生・損保의 構造

다음에 우리나라 保険市場(生・損保包含) 가문에서 生命保險市場과 損害保險市場의 構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生保市場은 1956 年度에는 約 0.01%를 占하여 보잘것이 없었으나 그後 急進的으로 增加하여 1960 年度에는 約 41.9%로 增加하고 1970 年度에는 50.4%로 增加하고 있는데 反해서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은 1956 年度에는 全體 保險市場(生・損保包含)에서 約 99.9%라는 絶對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었으나 1960 年度에는 約 58.1%로 下落하고 1970 年度에는 約 49.6%로 減少하여 生保와 損保는 그 比重이 轉倒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外國의 事例를 檢討하여 보면 우리는 外國의 경우를 네개의 集團으로 區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덴마크」, 「이탈리아」, 「풀투칼」, 「스위스」 및 美國 등의 第 1 集團으로서 이들國家들은 그들의 總收入保險料중에서 生保分이 顯著하게 減少하고 이에 反해서 損保의 경우가 生保의 그것에 비해서 높은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는 印度 및 日本 등의 第 2 集團이며 이들에 있어서는 總收入保險料중 生保分이 繼續 顯著하게 增加하고 있는 경우이다.

세째로는 獨逸, 佛蘭西, 「홀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및 「멕시코」 등의 第 3 集團이며 이들國家에 있어서는 生保部門의 實績이 比較的 安定되어 있으며 단지 「스웨덴」만이國家의 干涉에 의해서 急激한 變化가 있었을 따름이다.

네째로 第 4 集團은 「필랜드」이며 이 나라는 1961 年 以來로 나타나기 시작한 急激한 上昇勢는 國家의 干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例外에 속한다.

本人은 韓國을 第 3 集團에 歸屬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全保險料收入(生·損保包含) 가운데 生保分이 占하는 比重이 過去 即 1963 年까지는 急速하게 增加하여 無이나 1964 年 以後에 들어와서는 生保分이 安定勢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國民所得에 대해 生命保險料收入과 損害保險料收入이 占하는 比重을 살펴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生命保險料收入이 國民所得에서 占하는 比重은 1958 年度에는 0.12%이

〈表 II-2〉 生保와 損保의 構成
(單位·百萬원)

區 分 年 度	生 保		損 保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1956	4.4	0.01%	353.5	99.9%
1957	33.7	0.08	407.3	79.9
1958	252.0	35.2	463.7	64.8
1959	408.5	44.8	478.7	55.2
1960	383.4	41.9	530.1	58.1
1961	444.5	46.1	521.0	53.9
1962	1,152.9	61.2	665.0	38.8
1963	1,467.0	62.9	863.8	37.1
1964	1,640.1	55.6	1,287.5	44.4
1965	2,577.9	55.5	2,064.7	44.5
1966	3,510.5	43.5	4,543.6	56.5
1967	5,360.6	46.7	6,114.7	53.3
1968	8,079.3	48.8	8,443.5	51.2
1969	11,232.0	47.9	11,442.4	52.1
1970	14,556.0	50.4	14,300.0	49.6

註: 保險料收入은 民營保險만의 數值임.

資料: 1963, 1969 및 1970年度『保險年鑑』에 의하여 計算.

던 것이 1963 年度에는 0.30%로 增加하고 다시 1970 年度에는 0.56%로 높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損害保險料收入이 國民所得에서 占하는 比重도 1963 年度에는 0.18%이던 것이 1970 年度에는 0.55%로 增加하고 있다.

이를 外國의 例에서 살펴 보면 1958 年—1963 年까지 사이의 5 年間의 傾向에서 살펴 보면 各國의 生命保險料收入이 自國의 國民所得에서 占하는 比重은 「멕시코」만이 不變이고 「스위스」만이 減少하고 있을 뿐 其他國은 모두 增加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스위스」는 1959 年度와 1960 年度에 각각 2.64%까지 上昇하였으나 그 後는 每年 減少하는 狀態에 있다. 이에 反해서 同國의 國民所得에 대한 損害保險料의 比重은 1958 年度의 2.51%에서 每年 減少하여 1963 年度에는 2.84%에 臨하고 있다.⁽¹⁾

自國의 國民所得中 生命保險料가 占하는 比重이 가장 큰 國家는 英國의 4.06%(63 年)와 美國의 3.35%(63 年)이다. 그러나 韓國은 1958 年度에도 0.12%로 가장 低位이고 1963 年度에 와서는 0.30%로서 「멕시코」와 같이 가장 낮다.

다음에 「各國의 國民所得에 대한 生命保險料와 損害保險料의 比量을 서로 比較하여 보면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 損害保險料의 比率이 큰 것을 發見할 수 있다. 단지 「캐나다」에 있어서는 生命保險의 比率이 크고 日本에 있어서는 특히 生命保險의 比率이 顯著하게 크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라틴」系의 國家 및 南「아메리카」諸國과 같이 「인도네」의 傾向에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生命保險料의 比率이 훨씬 작다.」⁽²⁾

우리나라는 1963 年度에 있어서 初半의 國家와는 달리 生保가 損保에 비해서 그의 比率이 큰 것을 發見할 수 있고 國民所得에 대한 損害保險料가 占하는 比率이 우리나라가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970 年度에 오면 生保 0.56%, 損保 0.55%로서 兩比率은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現象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保險市場을 開拓할 수 있는 潛在力이 많이 있음을 반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各國의 國民所得에 대한 生・損保險料의 比率을 1958 年度와 1963 年度에서 이를 國際的으로 比較하여 보아도 첫째는 「멕시코」를 除外하고는 各國이 모두 1958 年度에 비해서 1963 年度가 그의 比率이 減少로 높아가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둘째로는 이들 諸國중 8% 以上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英國의 8.57%와 美國의 8.01% 뿐이고 「멕시코」는 0.83%로 가장 低位에 있는 나라이다. 우리 韓國은 그보다 一層 낮아 58 年度에 0.34%에서 63 年度에는 0.47%를 나타내고 있다.

(1) 日本保險界社, 『保險界』, 第19卷, p.54 參考.

(2) 『前揭書』, p.54 參考.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는 「國民所得과 保險料와의 關聯度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即所得成長率은 保險料伸長率의 發展要因이 됨과 同時に 制約要因도 된다는 事實이다. 即高所得國이면 高所得國대로 低所得國이면 低所得國대로 거의例外 없이 保險料는 所得成長率에 追從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表 II-3〉 國民所得에 대한 生命保險料와 損害保險料의 比率(1963年度)

國名	生保	損保	國名	生保	損保
英 國	4.06%	4.51%	奧 斯 트 라 아	0.52%	2.89%
美 國	3.35	4.66	佛 蘭 西	0.74	2.56
카 나 다	3.34	3.30	폴 투 칼	—	—
오 스 트 릴 리 아	2.31	3.22	스 페 인	0.24	2.24
스 웨 스	2.53	2.84	이 탈 리 아	0.56	1.51
西 獨	1.57	2.76	멕 시 코	0.30	0.53
日 本	2.77	1.01	韓 國	0.30	0.18

資料：1) 日本保險界社發行, 『保險界』, p. 54.

2) 韓國資料는 『保險年鑑』과 經濟企劃院資料에 의하여 計算하였음.

III. 保險成長率의 構造

1. 保險成長率과 經濟成長率의 構造

우리나라의 保險料成長率은 그동안 外國에서도 볼 수 없을 程度로 急速하게 增加하여 来다.

1960 年度에는 2.9%에 不過하던 保險料增加率(生·損保包含)이 1965 年度에는 57.5%, 1970 年度에는 28.6%의 높은 成長率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60—1970 年間의 11 年 平均을 취하여 보아도 우리나라의 年平均 保險料增加率은 43.0%의 높은 成長率을 示顯하여 왔다.

이것은 外國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아도 매우 높은 保險成長率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具體的으로 1965 年度 保險料成長率을 基準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保險成長率과 外國의 그것과를 比較하여 보면 韓國의 保險成長率은 57.5%로서 가장 높고 日本이 20.5%로서 다음이고, 西獨이 13.4%, 美國이 9.0% 등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保險成長率을 經濟成長率과 比較하여 보면 우리나라도 大部分의 外國의 경우와 같이 保險成長率이 自國의 經濟成長率을 超過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3) 日本損害保險事業研究所刊, 『損害保險研究』, 第 27 卷, 第 1 號, pp. 224—225 參考.

<表 III-1>

우리나라 保険料增加率

年 度 别	生 保	損 保	計	增 加 率
1959	408	479	887	—
1960	323	530	913	2.9%
1961	445	521	966	5.8
1962	1,053	665	1,718	77.8
1963	1,467	364	2,331	35.7
1964	1,640	1,288	2,948	26.5
1965	2,578	2,065	4,643	57.5
1966	3,510	4,544	8,054	73.5
1967	5,361	6,115	11,476	42.5
1968	8,079	8,444	16,523	43.9
1969	11,232	11,442	22,442	35.8
1970	14,556	14,300	28,856	28.6

註 : 1) 增加率은 經常價格에 의한 增加率임.

2) 生保는 民營生命保險단임.

資料 : 韓國保険學會刊, 『保險學會誌』, 第6輯, p. 10.

우리나라는 1964 年度에 經濟成長率은 8.3%인데 反해서 保険料成長率은 26.4%, 1965 年度에는 經濟成長率은 7.4%인데 反해서 保険料成長率은 57.5%, 1970 年度에는 經濟成長率은 8.9%인데 反해서 保険料成長率은 28.6%로서 保険成長率이 經濟成長率을 超過하고 있다.

이것을 外國의 경우에서 보아도 「殆半의 國家에 있어서 모두 그나라의 保険料成長率이 自國의 經濟成長率을 超過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1951年—1966年까지 15 年間 사이에도 全世界는 生·損保를 莫論하고 높은 增加率을 보여주고 있다.」⁽⁴⁾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그것이 비록 急激한 「인프레」에 基因하고 있다고는 하나 生·損保에서 각각 2,313% 및 2,604%의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⁵⁾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68 年度만을 比較해 본다고 해도 美國은 經濟成長率이 年 8.2%인데 反해서 保険料成長率은 年 9.3%이며, 西獨도 經濟成長率은 年 7.0%인데 反해서 保険料成長率은 年 11.3%, 日本은 經濟成長率이 年 15.3%인데 대해서 保険料成長率은 年 25.1%나 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保険成長率도 大體的으로 先進諸國과 同一한 傾向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0 年代에 우리나라에서 外國에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의 急速한 保険成長率을 보인 것은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60 年代에 高度의 經濟成長으로 인해서 國民들의 높은 所得水準

(4) 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月報』, 第57號, p. 64 參考.

(5) 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月報』, 第64號, p. 61 參考.

〈表 III-2〉

保險成長率과 經濟成長率(1963/68)

國名	保險料成長率	經濟成長率	1人當國民所得(1962)	國名	保險料成長率	經濟成長率	1人當國民所得(1962)
오스트랄리아	10.2%	8.0%	2,456 \$	스웨덴	10.3	8.4	3,176
네지움	10.5	8.3	2,125	스위스	10.1	7.8	1,637
서독	11.2	7.0	2,262	스페인	19.2	12.5	771
불란서	13.0	8.8	2,505	미국	8.3	8.2	4,311
이탈리아	14.0	9.4	1,401	일본	21.8	15.3	1,401
카나다	9.0	9.0	3,035	韓國	36.2	23.1	223
오스트리아	12.6	7.2	1,601				

註 : 1) 1970年版, 『韓國經濟年鑑』

2) 『保險日報』, 1970年7月號

3) 韓國 1人當國民所得은 1970年末 數字임.

의 向上을 기할 수 있었고 둘째로는 損害保險分野에서 지난 60 年代에 自動車保險과 特種保險이 急速하게 成長하였을 뿐만 아니라 生命保險分野에서도 國民貯蓄組合法의 制定으로 인해서 契約高뿐만 아니라 1件當 平均契約이 顯著하게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自動車保險과 特種保險은 62 年度까지만 하여도 그의 實績이 전혀 없었으나 71 年度에는 損害保險中에서 自動車保險이 9.3%, 特種保險이 21.8%로서 全體 損害保險中에서 이 두 保險이 占하는 比率이 그 間 51.1%나 될 수 있을 程度로 成長되었으며 生命保險分野(民營保險)에서도 60 年度末의 保有契約은 26 萬件에 85 億원에 不過하였으나 70 年 12 月末 現在로는 304 萬件에 2,664 億원으로 增加했고 이것은 件數에 있어서는 11.6 倍인데 契約高에 있어서는 40.5 倍의 增加를 意味하는 것이며 1件當 平均契約高가 32,000 원에서 86,973 원으로 增加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2. 保險種類別成長率의 構造

우리나라의 保險種類別成長率(生命保險 · 損害保險 · 社會保險)을 보면 위의 세 가지 保險種類 가운데서 生命保險의 경우가 其他 保險種類의 경우보다 一層 急速하게 增加하여 引起을 發見할 수 있고 다음이 社會保險이고 그 다음이 損害保險의 順位로 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成長率을 보면 우리나라 生命保險은 1962 年度에는 그의 對前年比 成長率이 158.6%있었으나 1965 年度에는 56.5%로 減少하였다가 1970 年度에는 29.6%로 다시 減少하고 있다. 그리고 1962—1970 年間의 年平均成長率은 51.4%로서 其他의 保險種類의 경우에 비해서 가장 높다.

다음 우리나라 損害保險成長率은 1962 年度에는 23.6%이던 것이 1965 年度에는 34.5%로 增加하였다가 이것도 또 역시 1970 年度에는 21.4%로 減少하고 있으며 1962—1970

年間의 年平均成長率은 40.3%로서 生命保險과 社會保險의 그것에 비해서 가장 낮다.

끌으로 우리나라 社會保險成長率을 보면 우리나라 社會保險은 1962年以後에 들어와서야 各種의 社會保險關係立法이 制定公布됨으로써 1961年度에는 遷信部의 國民生命保險을 除外하고는 별로 實績이 없는 形便이었으나 1962年度에 들어와 우리나라에 各種의 社會保險이 出現하게 되어 1962年度에 64.0%의 높은 增加率을 보였으며 1965年度에는 그의 增加率이 減少되어 對前年比 增加率이 零으로까지 下落하였다가 그後 急速度로 增加하여 1970年度에는 73.7%의 成長率을 보여 주었으며 1962—1970年間의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年平均增加率은 42.6%로 오히려 損害保險의 그것보다도 높다.

다음에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成長率이 其他種類의 保險의 그것에 비해서 急速한 理由는 「1962年2月 革命政府에 의해서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所要的 內資를 動員할 目的으로 國民將蓄組合法을 公布하게 된에 따라 同法에 의한 團體保險의 加入으로 生命保險의 契約商가 그동안 急速히 增加한 태 있다」⁽⁶⁾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社會保險이 60年代에 急速한 發展을 가져온 主要한 理由는 1961年 5·16革命 以前까지는 國民生命保險을 除外하고는 이렇다할 社會保險制度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5·16革命 以後 즉 1962年以後에 들어와서 各種의 社會保險關係立法・制訂이 實施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60年代에 우리나라 社會保險成長率을 높이는데 크게 寄與한 것은 國民生命保險과 產災保險 그리고 公務員年金이라고 할 수 있겠다.

〈表 III-3〉 保險種類別成長率과 經濟成長率 (單位 : %)

	生保成長率	損保成長率	社保成長率	經濟成長率
1962	158.6	27.6	64.0	3.5
1963	27.2	29.9	71.8	9.1
1964	11.9	49.0	16.2	8.3
1965	56.8	34.5	.0	7.4
1966	36.5	98.3	18.4	13.4
1967	52.7	77.9	30.5	8.9
1968	50.6	30.8	63.3	13.3
1969	39.7	35.5	46.0	15.9
1970	29.1	21.4	73.7	—
平均	51.4	40.3	42.6	8.2

註: 1) 生・損保成長率은 保險料成長率임.

2) 社保成長率에서 產災保險은 年度別收納額, 軍人保險은 保險料收入, 公務員年金은 年度別歲入額, 醫療保險은 年度別收入實績에 의하여 計算하였음.

(6) 大韓損害保險公社刊, 『保險月報』, 第54號, p.10 參考.

끝으로 60 年代에 우리나라 損害保險成長率을 높이는데 크게 寄與한 것은 上述한 바와도 같이 우리나라 自動車保險과 特種保險의 顯著한 發達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은 外國과 同一한 傾向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保險種目別成長率의 構造

1) 生命保險의 種目別成長率

먼저 生命保險成長率(民營保險만의 경우)을 保險契約高를 基準으로 하여 살펴 보면 1963 年度에는 無慮 155.6%의 增加率을 보였던 것이 1964 年度에는 0.1%로 下落하였으며 65 年度에는 다시 22.3%, 66 年度에는 38.9%, 67 年度 42.2%, 68 年度 44.5%로 繼續 다시 上昇하였다가 69 年度에는 40.9%, 70 年度 38.7%로 다시 下落하여 1963—1970 年 年平均 47.9%의 높은 增加率을 보여 주었다.

다음에 이를 構成하고 있는 生命保險의 種目別成長率을 보면 여기서 生命保險의 種目을 國民·團體·生存·死亡·養老의 다섯으로 나누어 이를 보면 1963—1970 年 사이의 8 年間 가장 빠른 成長을 보여 준 保險種目은 養老保險으로서 그 間 年平均 184.5%의 成長率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同期間 死亡保險으로서 年平均 93.8%, 그 다음이 國民生命保險의 87.0%, 生存保險의 50.2%, 團體保險의 45.6%의 成長率로 되어 있다.

먼저 養老保險의 成長率을 보면 養老保險은 1963 年度에는 無慮 120.0%의 增加率을 보였으나 1968 年度까지 大體的으로 遲減하는 傾向을 보이다가 1969 年度에 와서 131.2%로 다시 急增하고 1970 年度에는 다시 42.8%로 減少하고 있다. 그러나 이 養老保險은 다른 生命保險의 種目에 비해서 大體的으로 安定的인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反해서 死亡保險은 1963 年度—1968 年度 사이에는 零 대지 負의 成長率을 維持하여 오다가 1969 年度에 와서 704.3%의 急速한 成長을 보여 주었고 1970 年度에 오면 다시 75.8%로 그의 成長率이 減少된다. 따라서 이 死亡保險은 그동안 不振하던 것이 最近에 와서 急作스럽게 成長率이 急上昇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生存保險은 1963 年度에는 104.1%라는 높은 增加率을 보였으나 1966 年度까지 大體的으로 下落하다가 1967 年度에 와서 다시 83.5%로 上昇하고 1970 年度까지 다시 下落하여 1963—1970 年內에 年平均成長率 50.2%를 보여 주었다.

團體保險도 1963 年度에 154.0%라는 높은 增加率을 보이다가 1967 年度까지 大體的으로 下落하고 1968 年度에 56.7%로 急增하였다가 다시 增加率이 鎮化되어 1970 年度의 30.3%까지 下落하고 있다. 그 結果 1963—1970 年間의 年平均成長率은 45.6%를 나타냈다.

生命保險의 以上의 團體·生存·死亡·養老의 네 種目 가운데 1963—1970 年 사이의

8年間 生命保險의 全體成長率 47.9% 보다 높은 成長率을 보여주고 있는 種目은 養老保險의 184.5%, 死亡保險의 93.8%, 生存保險의 50.2%이며 이것보다 下廻하는 保險種目은 團體保險의 45.6% 뿐이다.

글으로 國民生命保險成長率을 考察하여 보면 이 國民生命保險은 日帝時의 簡易生命保險의 業務를 繼承한 것이며 이 保險은 解放以後 諸般輿件의 不備와 社會的不安定에 따라 거우 命脈만을 維持하여 오다가 5·16 革命 以後 經濟開發計劃을 위한 內資動員의 目的으로 1962年 2月 9日 法律 第1020號로 公布된 貯蓄組合法에 의하여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即, 國民生命保險은 同法 第3條 第1項 第1號에서 貯蓄의 方法으로 生命保險料의 納入을 規定함으로써 契約高의 大幅的인伸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 結果 우리나라 國民生命保險을 保險料收入을 基準으로 하여 살펴 보면 1962年度에는 40.1%, 1964年度 450.4%, 1965年度 -69.3%, 1966年度 63.3%, 1967年度 54.4%, 1968年度 46.2%, 1969年度 83.7%, 1970年度 27.9%의 對前年比 增加率을 보여 1963-1970年 사이의 8年間에 年平均 87.0%란 높은 成長率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養老保險의 184.5%와 死亡保險의 93.8% 보다는 뒤지고 있다.

〈表 III-4〉 生命保險의 種目別成長率 (單位: %)

年 度	國民生命保險	團體保險	生存保險	死亡保險	養老保險
1963	40.1	154.0	104.1	0	1,200.0
1964	450.4	7.4	14.4	0.07	22.5
1965	-69.3	15.1	55.3	0.09	27.3
1966	63.3	40.7	40.8	-11.7	14.7
1967	54.4	31.9	83.5	-0.07	26.7
1968	46.2	56.7	19.4	-17.8	10.9
1969	83.7	29.7	62.8	704.3	131.2
1970	27.9	30.3	21.4	75.8	42.8
平均	87.0	45.6	50.2	93.8	184.5

註: 1) 國民生命保險은 年度末維持契約保險料에 의하여 計算하였음.

2) 其他種目은 契約高成長率임.

2) 損害保險의 種目別成長率

損害保險의 成長率을 保險契約高를 基準으로 보면 우리나라 損害保險成長率은 1963年 24.3%에 不過하였으나 1964年 67.5%로 急增하고 이것이 다시 遷減하여 1967年 24.1%까지 減少하였다가 다시 1968年에는 67.3%로 增加되고 그 後는 다시 下落하여 1971年에 20.4%까지 減少되고 있다. 그 結果 1963-1971年間의 年平均增加

率은 43.8%란 높은 成長率을 보여 주었다.

이를 火災・海上・自動車・特種의 네 種目으로 나누어서 考察하여 보면 먼저 이 네 種目的 損害保險中에서 1963—1971年사이의 8年間 가장 急速한 增加率을 보이고 있는 保險種目은 特種保險으로서 106.3%이고, 다음이 93.5%의 自動車保險, 그 다음이 47.7%의 海上保險, 다음이 火災保險이 37.6%의 順位로 되어 있다.

먼저 火災保險의 成長率을 보면 火災保險은 1963年度에는 51.7%란 높은 增加率을 보였으나 그 後에 1970年度의 58.9%의 높은 增加率이 있기는 하였으나 大體的으로 繼續減少하여 1971年度에는 26.7%의 增加率로大幅 減少되고 있다. 그 結果 1963年—1971年 사이의 9年間에 年平均 37.6%란 다른 種目에 비해서 가장 낮은 增加率을 나타냈다.

다음에 海上保險의 成長率을 보면 이것은 1973年度에는 -11.9%라는 負의 增加率을 보였으나 1964年度에는 151.8%란 높은 增加率을 보였고 그 後 1967年度까지 繼續 增加率이 減少되었다가 1968年度에는 106.0%로 그 增加率이 急增하고 이것이 다시 1971年度의 0.01%까지 繼續 減少하고 있다. 그 結果 1963—1971年 사이의 9年間에 年平均 47.7%의 增加率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海上保險의 增加率을 보면 1964年度의 151.8%와 1968年度의 106.0%의 增加率을 除外하면 幾餘의 7個年間의 海上保險의 增加率은 不振奮 狀態에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海上保險의 發展을 보잘것 없게 한 理由인 것이다.

이에 反해서 自動車保險은 그 間 急速한 成長을 보여왔으며 이 自動車保險은 1963年度에는 -50.8%의 負의 成長率을 보였으나 그 後 大體的으로 繼續 增加하여 1971年度에는 93.9%란 높은 增加率을 보여 주었다. 그 結果 1963—1971年사이의 9年間에는 93.5%란 높은 年平均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特種保險도 1963年度에는 거의 實績이 없었으나 1964年度에는 無慮 117.7%의 增加率을 보였다가 다음해인 1965年度에는 繼續 增加하여 227.5%가 되었으며 그 後 繼續 減少하여 1969年度에는 7.9%가 되고 1970年度에는 다시 增加하여 111.2%가 되었으며 1971年度에는 다시 51.9%로 減少하고 있다. 그러나 이 特種保險은 그 間 急速한 速度로 增加하여 1964—1971年 사이의 8年間에 年平均 106.3%란 매우 높은 增加率로 成長하여 왔다.

위와 같은 네 가지의 保險種目中 損害保險의 增加率(1963—1971年) 43.8%보다 높은 것은 自動車保險의 93.5%와 特種保險의 106.3% 뿐이며 이것보다 낮은 種目은 火災保險의 37.6%와 海上保險의 47.7%이다.

〈表 III-5〉

損害保險의 種目別成長率

	火災保險		海上保險		自動車保險		特種保險		計	
	契約高	保險料收入	契約高	保險料收入	契約高	保險料收入	契約高	保險料收入	契約高	保險料收入
1963	51.7%	41.1%	-11.9%	34.9%	-50.8%	333.3%	- %	- %	24.3%	52.9%
1964	21.5	0.1	151.8	127.2	93.7	153.8	117.7	180.0	67.5	44.5
1965	35.8	34.5	58.5	64.3	149.7	114.2	227.5	157.1	54.8	64.0
1966	30.2	42.4	65.0	95.1	37.2	98.1	187.9	925.0	59.6	121.1
1967	48.7	27.5	-0.002	-0.07	143.8	32.1	46.8	102.1	24.1	35.5
1968	27.6	32.5	106.0	102.6	-20.6	40.4	99.7	19.3	67.3	44.6
1969	37.5	43.2	26.4	30.7	137.6	50.5	7.9	12.6	30.4	31.7
1970	58.9	21.6	33.1	30.6	58.2	43.1	111.2	0.0	45.9	24.0
1971	26.7	65.8	0.01	0.03	293.9	30.9	51.9	27.4	20.4	20.4
平均	37.6	34.3	47.7	53.9	93.5	100.7	106.3	177.9	43.8	48.7

3) 社會保險의 種目別成長率

社會保險의 成長率을 주로 保險料收入을 基準으로 하여 보면(產災保險은 年度別收納額, 醫療保險은 年度別收入實績, 公務員年金은 年度別歲入額으로 把握하였음) 우리나라 社會保險은 1962 年度에는 公務員年金의 急速한 成長으로 인해서 對前年比 61.6%의 增加率을 보았으며 이와 같은 趨勢가 1963 年度에도 繼續되어 同年度에는 對前年比 71.8%의 높은 增加率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 後는 그의 增加率이 漸次로 減少되어 1965 年度에는 그의 對前年比 增加率이 零으로까지 下落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社會保險은 1966 年度부터는 그의 增加率이 漸次로 增加하여 1966 年度에는 18.4%, 1967 年度 30.5%, 1968 年度 63.3%, 1969 年度 46.9%가 되고 1970 年度에 오면 對前年比 73.7%의 增加率을 보여 주게 된다. 그 結果 1962-1970 年에 年平均 42.6%의 增加率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1960 年代의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成長率을 左右하여 온 것은 주로 우리나라의 公務員年金의 增加率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後에서도 言及하겠지만 우리나라 公務員年金은 1960 年代를 통해서 우리나라 全體의 社會保險中에서 99.7-99.8%의 絶對的比重을 占하여 왔기 때문이다.

다음에 產災保險의 成長率을 보면 우리나라 「產災保險은 1963 年 11 月 5 日 法律 第 1438 號로서 公布되었으며 이 法律의 施行令이 1964 年 6 月 9 日 大統領令 第 1837 號로 公布되어 1964 年 7 月 1 日을 期하여 우리나라에서 初음으로 實施되게 되었다.

最初에는 當時 500 名 以上的 勤勞者를 使用하는 鎳業 및 製造業의 64 個業體 勤勞者 8

〈表 III-6〉

社會保險의 種目別成長率

	產災保險	醫療保險	軍人保險	公務員年金	計
1962	— %	— %	— %	64.3%	64.0%
1963	—	—	21.3	43.7	71.8
1964	—	—	0	14.1	16.2
1965	202.6	—	0	0	0
1966	107.5	—	0	0.1	18.4
1967	69.1	63.7	0	24.2	30.5
1968	43.8	21.1	0	71.0	63.3
1969	60.3	61.9	0.1	44.6	46.0
1970	30.3	114.1	0	92.9	73.7
平均	85.6	65.2	2.7	39.4	42.6

註：產災保險은 年度別收納額에 의하여 計算하였음.

軍人保險은 保險料收入(個人負擔+國庫負擔)에 의하여 計算하였음.

醫療保險은 年度別收入實績 " "

公務員年金은 年度別歲入額 " "

萬名에 대하여 適用하였으나 그 後 漸次 擴大되어 1970 年度에는 當時 50 名 以上을 使用하는 5,583 個 事業體의 勤勞者 78 萬名이 同階의 惠澤을 받게 되었다.⁽⁷⁾

이 保險의 成長率은 1965 年度에는 無慮 對前年比 202.6%의 높은 增加率을 보였으나 그 後 漸次的으로 遲減하여 1966 年度 107.5%, 1967 年度 69.1%, 1968 年度 43.8%, 1969 年度 60.3%의 增加率을 보이고 1970 年度에는 그의 對前年比 增加率이 30.3%로 下落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產災保險은 1965—1970 年 사이의 6 年間에 年平均 85.6%라는 높은 增加率로 成長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나라 產災保險도 그 間 높은 增加率로 成長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이 產災保險이 社會保險全體에서 占하는 比重은 0.1—0.2% 程度밖에 차지하여 오자 못하였으므로 우리나라 產災保險의 成長이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成長率에 미친 寄與度는 매우 적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醫療保險의 成長率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 「醫療保險은 1963 年 12 月 16 日 法律 第 1623 號」 醫療保險法이 制定 公布된으로써 法的인 根據는 마련되었고 그 間 이를 施行하는데 必要한 各種法令을 整備한 後 1965 年 湖南肥料株式會社의 醫療保險組合 設立을 先頭로 1990 年末 現在 3 個의 醫療保險組合에서 示範事業을 實施하고 있고 1970 年 8 月 7 日 法律 第 2228 號 醫療保險法을 全面 改定, 適用對象을 全國民으로 擴大하고 勤勞者, 公務員,

(7) 大韓再保險刊, 『保險年鑑(1970)』, p.297 參考.

軍人(中士以上)은 強制 適用하고 自營者 및 其他 勤勞者는 任意로 加入할 수 있도록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醫療保險의 體制를 確立하였다.]⁽⁸⁾

우리나라 醫療保險의 成長率도 그 間 높은 增加率을 보여 왔으며 1967 年度 對前年比 增加率은 63.7%, 1968 年度는 21.1%, 1969 年度 61.9%로, 1970 年度 114.1%로, 1967—1970 年 사이의 4 年間에 年平均 65.2%의 높은 增加率로 成長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醫療保險도 위의 여러 保險에 있어서와 같이 同保險이 全體의 社會保險에서 占하는 比重이 0%程度 밖에 되지 않아 醫療保險의 成長이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成長率에 미친 寄與度는 보잘것이 없었다.

다음에 軍人保險의 成長率을 보면 「軍人保險은 1962 年 3 月 21 日 法律 第 1036 號로 實施를 보게 되었으며 ① 中士以上의 軍人, ② 保險에 加入한 准上官 또는 下士官으로서 幹部候補生이 된 者, ③ 이미 加入한 保險을 轉役 또는 除籍後에도 繼續고자 하는 者 등으로 이들에 대한 死亡 或는 轉役後 本人과 家族의 生活安定, 福祉向上, 軍事援護對象者の 定着貸付金 助成 등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⁹⁾

이 軍人保險은 1962 年 처음으로 시작된지 1970 年까지 9 年間, 1970 年에는 同保險이 시작된 1962 年에 비해 49.8%의 成長을 나타낸 셈이다.

그러나 이를 對前年比 增加率로 따져보면 1963 年度에 21.3%와 1969 年度에 0.1%의 增加率이 있었을뿐 1964 年度, 1965 年度, 1966 年度, 1967 年度, 1968 年度 그리고 1970 年度는 보다 對前年比 增加率이 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1962—1970 年 사이의 9 年間에 年平均 2.7%라는 보잘 것 없는 成長을 보여왔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軍人保險이 社會保險全體에서 占하는 比重도 0%에 不過한 것으로 軍人保險의 成長이 우리나라 社會保險成長率에 미친 寄與度도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다음 우리나라 公務員年金의 成長率을 考察하여 보면 「公務員年金制度는 1960 年 1 月 1 日 公務員年金法을 制定公布함으로써 實施되게 되었으며 이 公務員年金은 公務員의 健康診斷, 疾病, 負傷廢疾, 分娩, 退職 또는 死亡에 대하여 適切한 給與를 支給함으로써 公務員에 대한 社會保險制度를 確立하고 公務員과 遺族의 經濟的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¹⁰⁾

이 公務員年金은 1962 年度에는 對前年比 64.3%라는 높은 增加率을 보여 주었으나 1963 年 1 月 28 日 軍人保險年金法이 制定公布됨에 따라 公務員年金制度와 軍人年金制度는

(8) 大韓再保險刊, 『保險年鑑(1970)』, p. 301 參考.

(9) 大韓再保險刊, 『保險年鑑(1970)』, p. 305 參考.

(10) 大韓再保險刊, 『保險年鑑(1970)』, p. 305 參考.

分離되게 되었으며 그 結果 公務員年金의 成長率도 그 後 遷減되게 되어 1963 年度 43.7%, 1964 年度 14.1%, 1965 年度 0%, 1966 年度 0.1%까지 下落했다가 1967 年度부터 다시 上昇하기 始作하여 1967 年度 24.2%, 1968 年度 71.0%, 1969 年度 44.6% 그리고 1970 年度에는 無慮 92.9%까지 增加되었으며 1962—1970 年사이의 9 年間에는 年平均 39.4%의 增加率로 成長하여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이 公務員年金은 우리나라 社會保險가운데서도 1962 年—1970 年 사이에 無慮 99.7%—99.8%라는 絶對的인 比重을 占하여 왔으므로 이 公務員年金의 成長率이 우리나라 全體社會保險의 成長率에 미친 岩與度는 絶對的이었다 할 수 있다.

IV. 生命保險市場의 構造

生命保險市場의 構造를 우선 첫째 加入方法, 둘째 地域別, 세째 保險種目別을 中心으로 分析하고 이것을 다시 民營保險, 公營保險, 組合保險別로 分析하여 볼까 한다.

1. 加入方法에 의한 構造

「生命保險의 業種을 加入方法에 의하여 分類하면 團體保險과 個人保險으로 區分된다. 前者は 5·16 革命以後 第 1 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國內資本의 動員을 目的으로 1962 年 2 月 9 日 法律 第 1020 號로 公布된 國民貯蓄組合法에 의한 것이다. 即同法 第 3 條 第 1 項 第 5 號에서 貯蓄의 方法으로 民營生命保險에의 保險料拂入을 規定함에 의한 것이다. 이에 反해서 後者인 個人保險은 團體保險以外의 것으로서 一般的으로 生存保險, 死亡保險, 養老保險을 말한다.」⁽¹¹⁾

1) 民營保險

以上의 國民貯蓄組合法의 發効에 의하여 民營生命保險은 他律的으로 크게 成長하게 되었다. 우선 保險契約件數面에서 살펴 보아도 1961 年 10 月末 現在 8 社의 保險契約件數는 36 萬餘件에 不過하던 것이 1962 年末에는 6 社의 104 萬餘件으로 增加되고 이것이 1965 年末에는 208 萬餘件 그리고 1970 年末에 오면 304 萬餘件으로 增加되어 1970 年末에는 國民貯蓄組合法이 實施되기 以前인 1961 年 10 月末現在에 비해서 9 年間에 保有契約件數가 8.2 倍나 增加되었다.

한편 民營保險會社의 保險保有契約金額도 國民貯蓄組合法이 發効되기 以前인 1961 年末現在에는 12,229 百萬원에 不過하였으나 이것이 同法이 實施된 直後인 1962 年末現在의 保有契約金額은 31,214 百萬원으로 그의 約 2.5 倍로 增加하고 있고 이것이 또 1965 年末에

(11) 大韓損害再保險公社刊, 『保險月報』, 第55號, p.11 參考.

는 58,067 百萬원 그리고 1970 年度末 現在에는 264,451 百萬원으로 增加하여 1970 年末 現在는 同法이 實施되며 以前인 1961 年末 現在에 비하여 同期間中 約 21.6 倍의 增加를 보여 주고 있다.

그結果 同期間中 契約 1 件當 平均契約高도 增加하여 1962 年度에는 29.7 千원에 不過하던 契約 1 件當 平均契約高가 1965 年度에는 23.3 千원 그리고 1970 年度에는 145.7 千원으로 增加를 보이고 있다.

〈表 IV-1〉 契約 1 件當 平均契約高(新契約) (單位: 千원)

區分 年度	契約件數	契約高	契約 1 件當 平均契約高	區分 年度	契約件數	契約高	契約 1 件當 平均契約高
1962	823,852	24,495,776	29.7	1967	1,149,148	75,136,261	65.3
1963	370,459	12,630,224	34.1	1968	1,153,425	98,333,755	85.2
1964	382,412	15,128,979	39.6	1969	985,439	132,810,120	134.7
1965	1,268,790	29,580,133	23.3	1970	865,549	126,135,153	145.7
1966	853,903	40,711,173	47.6				

다음 全體 生命保險中 團體保險과 個人保險의 構造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全體 生命保險中 團體保險이 壓倒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이 그의 特色이다. 即, 1962 年度에 있어서는 團體保險의 比重이 無慮 79.4%인데 反하여 個人保險의 比重은 20.6%이었으나 이 것이 1970 年度에는 團體保險의 比重이 70.7%, 個人保險의 比重은 29.3%로 되어 團體保險의 比重이 若干은 減少되었으나 아직까지도 70% 以上이라는 데 比重을 維持하고 있다.

그럼에 「우리나라에서 團體保險의 比重이 不均衡的으로 肥大하게 發展한 主要한 理由는 1962 年에 實施하게 된 國民貯蓄組合法에 의하여 公務員 國營企業體職員들의 貯蓄이 團體保險에 限定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民營生保業界의 傾向은 각社가 대체로 同一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또한 最上級의 會社

〈表 IV-2〉 團體保險과 個人保險의 構成 (單位: 億원)

區分 年 度	團體保險		個人保險		區分 年 度	團體保險		個人保險	
	契約高	構成比 (%)	契約高	構成比 (%)		契約高	構成比 (%)	契約高	構成比 (%)
1962	96.6	79.4	25.5	20.6	1967	564.9	68.4	260.8	31.6
1963	245.8	78.8	66.3	21.2	1968	885.7	74.2	307.9	25.8
1964	264.1	77.4	77.3	22.6	1969	1,149.5	68.2	533.0	31.7
1965	304.1	72.6	113.7	27.4	1970	1,650.2	70.7	683.6	29.3
1966	428.2	73.7	152.4	26.3					

資料：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1970)』에 서 作成,

가 團體保險에 더욱 큰 比重을 두고 있는 것도 웃지 못할 事實이라 하겠다.⁽¹²⁾

이를 外國의 경우와 比較하여 보면 全體 生命保險中 團體保險이 韓國보다 큰 나라는 「알젠틴」의 88.7%와 「스웨덴」의 83.9% 뿐이다.

世界의 16 個 主要保險國家中 團體保險의 構成比가 50% 以上을 超過하고 있는 나라는 5 個國家(佛蘭西, 스웨덴, 터키, 알젠틴, 맥시코)에 不過하며 殘餘 11 個國家는 個人保險의 構成比가 50% 以上을 超過하고 있다.

生命保險의 保有契約高를 基準으로 보아서 가장 團體保險의 比重이 높은 나라는 「알젠틴」으로서 88.7%이며 다음이 「스웨덴」의 83.9%, 세째가 佛蘭西의 63.1%, 네째가 「터키」의 62.0%, 다섯째가 「멕시코」의 53.0%의 順位로 놓여 있다.

다음에 團體保險의 契約件數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에도 역시 「알젠틴」의 82.8%가 第 1位이고 다음이 「페루」의 78.9%, 세째가 「멕시코」의 71.8%, 네째가 「터키」의 71.6%의 順으로 된다.

이에 反해서 團體保險의 比重이 낮은 國家는 獨逸로서 각각 9.7%와 14.8% 그리고 英國이 21.2%와 4.6%, 日本은 保險契約高에 있어서 16.4%, 「네델란드」는 契約件數에 있어서 12.8%이다.

다음에 個人保險의 比重이 큰 나라를 考察하여 보면 個人保險의 構成比率이 가장 높은 나라는 保險契約高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獨逸이 90.3%로서 가장 높고 第 2位가 日本으로서 83.6%, 第 3位가 英國으로서 78.8%, 第 4位가 「이탈리아」로서 75.9%, 第 5位가 「니카라구아」의 64.4%, 다음이 「페루」의 62.8%, 「스위스」의 58.7%, 美國의 57.5%, 「네델란드」의 57.4%, 「카나다」의 55.4%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全體 生命保險中 個人保險의 比重이 큰 國家들중에는 經濟的 先進國家들이 많이 있으며 그의 主要한 理由로서는 특히 個人保險의 廣範圍한 分布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反面 美國과 「카나다」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團體保險과 個人保險이 對等한 比率을 보이고 있다.

2) 公營保險

國民生命保險이 取扱하는 業種은 現在 成人保險, 教育保險, 職場保險, 自立保險의 4 種이 있으며 이 네 種類의 國民生命保險中 職場保險이 바로 團體保險을 意味하고 나머지 成人保險, 教育保險, 自立保險의 세 種類가 個人保險을 意味하게 된다.

그런데 이 國民生命保險도 國民貯蓄組合法 第 3條 第 1項 第 1號에 의하여 貯蓄手段의

(12) 『前揭書』, p.12 參考.

〈表 IV-4〉

各國의 團體保險과 個人保險의 構成

(單位 : 百萬弗)

國名	區分	團體保險		個人保險	
		契約高	構成比 (%)	契約高	構成比 (%)
荷 蘭	團體保險	3,760	45.4	4,522	54.6
獨逸	團體保險	4,292	9.7	40,148	90.3
英國	團體保險	17,922	21.2	65,179	78.8
佛蘭西	團體保險	25,137	63.1	14,714	36.9
이탈리아	團體保險	2,257	24.1	7,131	75.9
네덜란드 ¹⁾	團體保險	10,735	42.6	14,454	57.4
스웨덴	團體保險	28,881	83.9	5,524	16.1
斯哥	團體保險	4,243	41.3	6,027	58.7
蒂基	團體保險	111	62.0	68	38.0
美國 ²⁾	團體保險	502,397	42.5	680,957	57.5
韓國 ³⁾	團體保險	38,780	44.6	48,108	55.4
南韓	團體保險	2,028	88.7	259	11.3
麥肯	團體保險	2,879	53.0	2,551	47.0
尼加拉瓜	團體保險	36	35.6	65	64.4
哥羅	團體保險	119	37.2	201	62.8
日本	團體保險	21,700	16.4	110,881	83.6
韓國	團體保險	413	70.7	171	29.3

註：1) 年金保險包含

2) 信用生命保險除外

3) 地方保險會社除外

資料：Swiss Reinscenae Company, *E. Sigma*, (8/August), 1970, p. 5 參考。

韓國資料는 1970年度 數値을 使用하였으며 換率은 美貨 1弗대 400원을 使用하였다.

하나로 指定되었으므로 1961年末 同法의 制定과 同時に 從來의 成人保險과 教育保險에 追加하여 소위 職場保險이라는 이름으로 團體保險을 販賣하기 시작한 것이다.

國民生命保險은 1961年末 現在 維持契約件數가 19萬餘件에 不過하던 것이 1965年末에는 38萬餘件으로 增加하고 이것이 1970年末 現在에는 86萬餘件으로 늘어나 1970年末은 1961年末에 비해서 9年間에 約 4.3倍의 增加를 보여 주고 있음에 不過하다.

이에 反해서 保有契約高面에 있어서는 1961年末現在 保有契約高는 792,253千원에 不過하였으나 1965年末에는 3,678,742千원으로 增加하고 이것이 1970年末 現在는 22,804,837千원으로 增加하여 1961—1970年사이의 9年間에 無慮 28.7倍가 增加되었다.

그 結果 契約 1件當 平均契約高도 同期間동안 顯著하게 增加하여 1961年度에는 6.9千원에 不過하던 契約 1件當 平均契約高도 1965年度에 오면 12.4千원으로 增加하고 이것이 1970年度에 오면 43.5千원으로 繼續 增加한다.

國民生命保險에 있어서 團體保險(職場保險)과 個人保險(成人保險, 教育保險 및 自立保險)

〈表 IV-5〉 國民生命保險의 契約 件當 平均契約高(新契約) (單位: 千원)

區分 年度	契約件數	契約高	契約1件當 平均契約高	區分 年度	契約件數	契約高	契約1件數 年約契約高
1961	42,882	295,665	6.9	1966	184,718	2,581,536	13.9
1962	110,969	1,241,403	11.2	1967	196,606	4,072,203	20.7
1963	84,769	915,852	10.8	1968	209,343	6,622,668	31.6
1964	71,870	791,817	11.0	1969	238,218	7,825,780	32.8
1965	113,385	1,413,168	12.4	1970	267,358	11,636,964	43.5

의 構成比는 團體保險에 비해서 個人保險이 壓倒的으로 차지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것을 民營生命保險과 比較해 볼 때 國民生命保險도 團體保險은 그 構成比가 遷減하고 個人保險은 遷增하는 傾向이 있는 點에서는同一하나 1970 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民營生命保險에서는 團體保險이 個人保險에 비하여 壓倒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는데 反하여 國民生命保險의 경우는 오히려 個人保險이 團體保險에 비해서 壓倒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다.

國民生命保險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團體保險은 1961 年度에는 全體 國民生命保險에 約 1.0%를 占하고 있었음에 不過하였지만 1962 年 國民貯蓄組合法이 發効된以後인 1962 年度에는 그의 比重이 一躍 48.6%로 增加하고 1966 年度에는 그의 比重이 67.3%까지 增加하였다가 그 後부터는 漸次로 遷減하여 1970 年度에는 그의 構成比가 34.9%까지 下落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個人保險은 1961 年度에는 全體 國民生命保險中 99.0%라는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後 漸次의으로 그 構成比가 下落하여 1966 年度에는 32.7%까지 下落하였다가 그 後 다시 漸次로 增加하여 1970 年度에는 65.1%까지 增加되고 있다. 이

〈表 IV-6〉 國民生命保險의 團體保險과 個人保險의 構成(保有契約) (單位: 千원)

年 度	團 體 保 險		個 人 保 險	
	契 約 高	構 成 比 (%)	契 約 高	構 成 比 (%)
1961	7,790	1.0	784,463	99.0
1962	905,612	48.6	960,024	51.4
1963	1,363,225	59.0	946,968	41.0
1964	1,653,227	60.4	1,083,234	39.6
1965	229,488	60.6	1,449,254	39.4
1966	3,119,397	67.3	2,515,630	32.7
1967	3,657,549	43.5	4,751,975	56.5
1968	5,516,777	44.8	6,815,595	55.2
1969	6,802,963	39.6	10,384,988	60.4
1970	7,965,695	34.9	14,839,142	65.1

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國民生命保險에 있어서는 1967 年度를 契機로 하여 그 比重이 轉換되어 團體保險보다도 個人保險이 그 構成比가 보다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組合生命保險

農業協同組合의 生命共濟는 1965 年 8 月부터 實施되었으며 그동안 좋은 成績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保險契約件數에서 이를 보면 1965 年에 있어서는 2 萬餘件이던 것이 1970 年에 오면 38 萬餘件으로 5 年間에 無慮 18.4 倍가 增加하였으며 保有契約高도 1965 年末 現在 1,604 百萬원에서 1970 年末 現在 69,298 百萬원으로 增加하여 1970 年末은 1965 年末에 비

〈表 IV-7〉 農協生命共濟의 實績(個人保險) (單位: 千원)

年 度	區 分		年 度	區 分	
	契 約 件 數	契 約 高		契 約 件 數	契 約 高
1965	20,877	1,604,090	1968	309,307	42,254,600
1966	230,250	26,379,840	1969	358,042	53,013,270
1967	300,466	38,575,585	1970	386,165	69,298,500

해서 無慮 43.2 倍의 높은 成長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現在까지의 契約은 全部 個人保險으로 볼 수 있으며 그 理由는 農業協同組合의 生命共濟를 實施한 1965 年 8 月이 國民貯蓄組合法에 의한 團體保險의 加入이 이미 民營生命保險과 國民生命保險에서 이루어진 後이었기 때문이다.

2. 地域別構造

1) 民營保險

民營生命保險은 「國民生命保險이나 農協生命共濟에 비해서 지나치게 大都市에 集中되고 있으며 그것도 특히 團體保險에 많이 依存하고 있으며 外務員의 分布도 都市中心으로 되어 있다.」⁽¹³⁾

먼저 1971 年 3 月末 現在의 生命保險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保險契約件數에 있어서 서울이 1,559.2 千件으로 全國의 51.2%를 占하여 第 1 位이고, 그 다음이 慶北으로서 209.0 千件으로 全國의 6.8%를 占하여 第 2 位이고, 全南이 196.3 千件으로 6.4%로 第 3 位, 釜山이 193.3 千件으로 第 4 位, 京畿가 170.4 千件의 5.6%로 第 5 位, 그리고 全北, 忠南, 江原, 慶南, 陸軍, 忠北, 濟州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를 契約高面에서 보면 서울이 1261.1 億원으로서 全國의 47.7%를 占하여 第 1 位이고, 陸軍은 371.2 億원으로 全國의 14.3%를 占하여 第 2 位, 그리고 釜山이 207.9 億원으

(13) 大韓損害再保險公社刊, 『保險月報』, 第55號, p. 14 參考.

로서 7.8%를 占하여 第 3 位, 慶北이 163.4 億원으로 6.1%를 占하여 第 4 位, 京畿가 125.3億원으로 4.8%를 占하여 第 5 位, 그다음이 全南, 江原, 忠南, 慶南, 全北, 忠北, 濟州의 順位로 되어 있다.

그리고 外務員數에서 보면 서울이 역시 4,568 名으로 全國의 48.5%를 차지하여 第 1 位이고, 그 다음이 慶北으로서 733 名으로 全國의 7.8%를 占하여 第 2 位, 다음이 全南으로서 730 名의 全國의 역시 7.8%를 占하여 第 3 位, 第 4 位가 京畿로서 717 名의 7.6% 그리고 釜山이 684 名으로서 7.2%를 占하여 第 5 位이며, 그 다음이 忠南, 慶南, 江原, 全北, 忠北, 濟州의 順位로 되어 있다.

〈表 IV-8〉 生命保險의 地域別構造(保有契約)
(1971年 3月末 現在) (單位: 千件)

區 分 地 域	契 約 件 數	構 成 比	契 約 高	構 成 比	外 務 員 數	構 成 比
서 울	1,559,298	51.2%	126,164,460	47.7%	4,568	48.5%
釜 山	193,314	6.4	20,796,437	7.8	684	7.2
京 繩	170,449	5.6	12,539,586	4.8	717	7.6
忠 北	97,768	3.2	5,058,093	1.9	250	2.7
忠 南	125,808	4.2	9,191,246	3.4	510	5.4
全 北	130,221	4.2	5,813,743	2.2	316	3.4
全 南	196,358	6.4	12,342,586	4.6	730	7.8
慶 北	209,002	6.8	16,348,592	6.1	733	7.8
慶 南	115,612	3.9	7,395,464	2.7	460	4.9
江 原	122,505	4.1	10,843,625	4.1	399	4.2
濟 州	9,477	0.3	832,685	0.4	48	0.5
陸 軍	110,922	3.7	37,124,630	14.3	—	—
合 計	3,040,734	100.0	264,451,147	100.0	9,415	100.0

資料：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1970)』에 의 하여 作成.

民營生命保險의 地域別構造를 都市와 地方別로 이를 整理하여 보면 1971年 3月末 現在로 서울은 契約件數에 있어서 1,559.2千件으로 全國의 51.2%이며 契約高面에서 1,261.6億원으로서 47.6%, 外務員數에 있어서 4,568 名으로 48.5%를 占하여 서울特別市 하나가 全國의 民營生命保險의 保險契約의 約 2分의 1을 차지하고 있는 結果가 되어 있으며 이 것에다 釜山까지를 합친다면 契約件數에 있어서는 1,752.6千件으로서 全國의 57.7%를 占하게 되고 契約高面에 있어서는 1,469.6億원으로서 全國의 55.6%를 占하고 外務員數에 있어서는 5,252 名으로서 55.8%를 占하게 된다.

이에 反해서 서울, 釜山을 除外한 其他地域은 契約件數에 있어서 1,288.1千件으로 全國의 42.3%를 占하고 있으며 契約高面에 있어서는 1,174.9億원으로서 全國의 44.4%,

外務員數에 있어서도 4,163 件으로서 全國의 44.2%를 占하며 우리가 契約件數나 契約高 그리고 外務員數에서 보다 綜合的으로 볼 때 民營生命保險의 保険契約은 서울, 釜山 두都市에서만도 全國의 60%가까이가 集中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이 二大都市 以外에 大邱, 大田, 光州, 春川, 仁川, 全州 등의 大都市를 이에 包含시킨다면 全國의 保険契約의 60% 以上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表 IV-9〉 生命保險의 都市・地方別構造(保有契約)

(1971年 3月末 現在)

(單位: 千원)

地域	契約件數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外務員數	構成比
서울	1,559,298	51.2%	126,164,460	47.6%	46,58	48.5%
釜山	193,314	6.5	20,796,437	8.0	684	7.3
其他地域	1,288,122	42.3	117,490,250	44.4	4,163	44.2
合計	3,040,734	100.0	264,451,147	100.0	9,415	100.0

資料: 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1970)』에 의하여 作成.

다음에 民營生命保險의 會社別地域構造를 살펴 보아도 역시 保険契約의 大部分이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最上位會社라고 볼 수 있는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의 경우를 例로 들어 보아도 新契約의 경우 契約件數의 55.9%가 서울에 集中되고 9.3%가 釜山에 集中되어 서울과 釜山의 두 大都市의 契約件數를 合하면 65.2%를 차지하여 全國의 保険契約件數의 3分의 2를 占하고 있으며 以上의 두 都市를 除外한 其他地域은 34.8%, 즉 全國의 約 3分의 2 程度밖에 차지하고 있지를 끗한다.

保險金額面에서도 서울은 全國의 無慮 59.8%를 占하고 있고 釜山은 全國의 5.8%를 차지하여 서울과 釜山 두 大都市를 合하면 이것도 契約件數와 거의 같은 比重인 65.6%를 占하여 全國의 保険契約金額의 約 3分의 2 程度를 차지하는 計算이 된다.

年末現在契約에서 보면 契約件數에 있어서는 서울이 45.5%, 釜山이 7.6%로서 合計 53.1%를 占하여 全國의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과 釜山을 除外한 其他地域은 46.9%를 占하여 全國의 2分의 1 未滿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保險金額面에 있어서도 서울이 50.8%, 釜山이 5.8%로 合計 56.6%를 占하여 이 두 大都市가 全國의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서울과 釜山을 除外한 其他地域은 43.4%를 占하여 全國의 約 2分의 1 未滿으로 되어 있다.

外務員數에 있어서도 서울이 45.1%, 釜山이 7.3%로서 合計 52.4%를 占하여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反해서 서울과 釜山을 除外한 其他地域은 47.6%를 占하여

〈表 IV-10〉

東邦生命의 地域別構造(1966年度)

(單位 : 千원)

區分 地域	新 契 約				年 末 現 在 契 約				外務員數
	契約件數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契約件數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서 울	130,080	55.9	7,334,981	59.8	277,891	45.5	12,348,355	50.8	480名
釜 山	21,711	9.3	717,527	5.8	46,348	7.6	1,393,338	5.8	77
其他地域	81,265	34.8	4,214,960	34.4	286,823	46.9	10,565,527	43.4	508

註：外務員數는 1965年末을 基準으로 한 것임。

資料：『保險月報』，第45號，p.132 및 『保險年鑑(1965年度版)』，p.128에서 作成。

全國의 2分의 1 以下를 차지하고 있다.

「大韓教育保險株式會社」의 地域別構造의 경우에는 契約件數에 있어서는 서울이 47.5%，釜山 13.8%，合計 61.3%로서 全國의 過半數를 이 兩大都市가 超過하고 있으나 從業員數에 있어서는 서울，釜山의 兩大都市가 31.9%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釜山을 除外한 全國의 其他地域이 68.1%를 占하여 過半數 以上을 占하고 있을 것이 그의 特色이라 할 수 있다.

〈表 IV-11〉 大韓教育保險의 地域別構造(個人保險)

(1967年 3月末 現在)

區分 地域	契約件數	構成比	外務員數	構成比
서 울	57,246	47.5%	415名	26.6%
釜 山	16,624	13.8	82	5.3
其他地域	46,697	38.7	1,061	68.1

資料：大韓教育保險株式會社

2) 公營保險

國民生命保險의 募集方法은 全國의 之 組織을 가진 860 餘個의 郵遞局을 利用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後述하는 農業協同組合의 系統組織과 相通하고 있다. 「當初에 國民生命保險은 中小都市와 群小地域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日政時代로부터의 事業方法이었으나 職場保險이 생기게 된 後부터는 都市地域에서 民營生命保險과 競合이 되고 있다. 그러나 契約募集에 있어서 遞信部는 遞信廳別로 目標額을 配定하여 儘勵하고 있으므로 實質的으로는 民營生命保險과 같이 大都市에 集中되고 있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1966年末現在의 保有契約을 보면 教育保險을 除外한 職場保險，成人保險，自立保險은 서울地域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¹⁴⁾

國民生命保險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契約件數에 있어서는 1972 年度를 基準으로 하

(14) 『前揭書』, p.14 參考。

여 봄 때 서울과 釜山이 23.4%에 不過한 데 비해서 서울과 釜山을 除外한 其他地域은 全國의 76.6%를 占하여 其他地域이 全國의 3分의 2 以上을 占하여 民營生命保險의 경우와는 正反對의 分布를 보여 주고 있고 保險金額面에 있어서도 서울과 釜山이 12.2%를 占하고 있는 데 反하여 其他地域이 87.9%를 占하여 一層 그의 分布가 地方으로 分散되어 있다.

또 國民生命保險은 民營生命保險과 比較할 때 保險契約件數에 對比한 契約金額은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매우 低調하다. 1970 年度末 現在 全國의 保險契約件數 863,921 件에 대하여 保險契約金額은 22,804,837 千원으로 1件當 保險契約金額은 26,396 원에 不過한 實情에 있다.

이것은 從來까지 最高保險金額을 現貨 10 萬원으로 制限한 것을 그대로 使用한 데 基因하지만 現在 最高 50 萬원까지 認定하고 있어 앞으로 1件當 契約金額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진다.

〈表 IV-12〉 國民生命保險의 地域別構造 (單位: 千원)

	1969			1970		
	件 數	保險料收入	%	件 數	保險料收入	%
서 울	212,510	44,327	17.2	214,747	39,630	11.9
釜 山	26,454	10,299	3.9	29,912	12,093	3.7
其 他 地 域	521,521	203,650	78.9	619,262	279,371	84.4
計	800,475	258,276	100.0	863,921	331,094	100.0
	1971			1972		
	件 數	保險料收入	%	件 數	保險料收入	%
서 울	212,700	44,585	10.7	189,127	54,496	8.6
釜 山	36,307	14,142	3.5	34,642	21,585	3.5
其 他 地 域	637,302	357,629	85.8	732,220	555,422	87.9
計	886,309	416,629	100.0	955,989	631,503	100.0

資料：遞信部。

3) 組合保險

農業協同組合 生命共濟契約의 募集도 中央會, 市郡組合, 里洞組合의 3段階에 의한 系統組織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點에 있어서는 國民生命保險의 募集網과 어느 面에서 相通하는 點이 있다.

따라서 이 農業協同組合 生命共濟는 이러한 農業協同組合의 既存組織을 基盤으로 組合의 指導員들이 募集員으로 活動하고 있고 그 對象은 주로 中農以上으로서 組合과 去來가 있

는 機會를 利用하여 거의 被動的으로 加入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그 結果 1965年8月 事業開始後 8個年이 經過한 1973年9月末 現在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契約件數 407千餘件에 保險契約金額 99,558 百萬원의 實績을 올렸다. 이것은 農協生命共濟가 처음으로 시작된 1945年度末에 비해서 契約件數에 있어서는 約 19.5倍의 增加를 意味하고 保險契約金額에 있어서는 約 62.0倍의 成長을 뜻하는 것이다.

다음에 農協生命共濟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서울地域은 民營生命保險과 國民生命保險의 경우와는 달리 農協生命共濟는 農業協同組合組織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實績이 이들에 비하여 별로 좋을 수는 없으나 1973年9月末 現在를 農協生命共濟가 시작된 1965年度와 이를 比較하면 保險契約金額에 있어서 無慮 51.3倍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民營生命保險이나 國民生命保險의 큰 威脅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나 問題는 現時點에서 農協生命共濟는 道廳所在地를 包含한 市·邑·面에 事務所를 두고 있어 이들 地域의 契約實績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現在의 狀態로서는 農協生命共濟는 國民生命保險과 地方에서 燥烈하게 競爭을 벌이고 있는 實情에 있다.

1973年9月末 現在를 基準으로 하여 農協生命共濟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保險契約金額에서 이를 볼 때 慶北이 全體의 20.0%를 占하여 第1位이고, 다음이 慶南으로서 17.0%로 第2位이고, 第3位가 15.5%를 占하고 있는 全南이며, 이 3個道의 合計가 무려 52.5%를 占하여 全國의 過半數 以上을 占하고 있고 殘餘 여러 道는 이것이 조금씩 分散되어 忠南이 11.0%, 京畿가 8.3%, 全北이 8.2%, 江原이 6.6%, 忠北이 6.1%, 서울이 3.3%, 濟州가 2.0%, 釜山이 1.9%, 「서울牛乳」가 0.1%의 順位로 되어 있다.

다음에 農協生命共濟를 都市·地方別로 이를 살펴 보면 農協의 生命共濟는 上述한 바와

〈表 IV-13〉

生命共濟의 地域別構造

(1973年 9月末 現在)

(單位 : 百萬원)

地 域	區 分	目 標	實 績			地 域	區 分	目 標	實 績		
			契約高	契約高	構成比				契約高	契約高	構成比
京 畿	慶 北	7,941	5,890	8.3		江 原	濟 州	6,246	4,722	6.6	
忠 北		5,739	4,385	6.1		濟 州		1,613	1,456	2.0	
忠 南		9,673	7,867	11.0		서 울		2,453	2,355	3.3	
全 北		6,987	5,835	8.2		釜 山		1,406	1,358	1.9	
全 南		13,887	11,045	15.5		서 울 牛 乳		3	3	0.1	
慶 北		18,338	14,294	20.0		合 計		90,000	71,374	100.0	
慶 南		15,714	12,164	17.0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 共濟部 資料에 의하여 作成.

같는 農協組織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國民生命保險의 경우보다도 더욱 地方에 많이 偏在되어 있고 都市에 보다 적게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1973年9月末 現在로 保險契約金額이 全國의 3.4%를 占하고 있음에 不過하고 釜山도 1.9%를 占하고 있어 서울과 釜山을 合計하여도 全國의 5.3%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民營生命保險의 경우 1971年3月 現在 서울이 全國의 47.7%, 釜山이 7.7%를 占하여 合計 55.4%로서 全國의 過半數를 超過하고 있는 點과 國民生命保險의 경우 1966年末 現在 서울이 全國의 21.4%, 釜山이 4.0%를 占하여 合計 25.4%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比較하여 보면 農協生命共濟의 경우가 가장 顯著하게 地方에 集中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表 IV-14〉 生命共濟의 都市地方別構造

(1973年9月末 現在)

(單位: 百萬원)

地 域	區 分	契 約 高	構 成 比
서 울		2,358	3.4%
釜 山		1,358	1.9
其 他 地 域		67,658	94.7
合 計		71,374	100.0

資料：農業協同組合中會 共濟部 資料에 의하여 作成。

3. 種目別構造

生命保險의 商品形態는 普通 團體保險과 個人保險(普通保險)으로 區分하고 後者는 다시 死亡保險, 生存保險 및 養老保險의 세 가지 基本形態로 分類된다. 團體保險에 關해서는 IV의 1 加入方法에 의한 分類에서 言及하였으므로 여기서는 生命保險 가운데에서도 個人保險의 種目別構造를 中心으로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다.

1) 民營生命保險

우리나라의 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의 特色은 個人保險에 비해서 團體保險의 構成比가 漸進的으로 下落하고 있는 데 反해서 個人保險의 構成比가 漸次로 增加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우리나라 團體保險의 比重이 壓倒的이라는 點과 個人保險의 內容에 있어서도 養老保險과 生存保險은 急速的으로 그의 構成比가 增加하여 온 반면, 死亡保險은 大體的으로 踏步狀態를 걸어 왔다는 事實 등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表 IV-1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生命保險 保有契約高도 그동안 急速한 速度로 增加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의 生命保險의 保有契約高는 1962年度에는 122.1億원에 不過하였으나 8年後인 1970年度에는 1962年度의 約 19.1倍인 2,333.8億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의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急進的인 發展은 1962年2月에 公布 實施된 國民貯蓄組合法에 의해서 團體保險加入이 激增한 데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다음에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과는 달리 生命保險中에서 團體保險이 壓倒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으며 1970年만을 基準으로 하여 보아도 生命保險中 團體保險이 占하는 比重이 約 70.7%로서 團體保險保有契約高가 全生命保險保有契約高中에서 3分의 2가까이를 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反해서 個人保險은 不過 29.3% 즉 3分의 1에도 未達하는 比重을 占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上述 한 바와도 같이 우리나라의 團體保險은 그의 構成比가 漸進的으로 下落하여 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은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構造의 特色中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우리나라 生保業界가 앞으로 指向해 나가야 할 길을 示唆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表 IV-15〉

生命保險의 種目別構成

(單位 : 億 원)

區 分 年 度	團 體 保 險		生 存 保 險		死 亡 保 險		養 老 保 險		計
	契約高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1962	96.6	79.1	23.8	19.5	0.29	0.3	1.4	1.1	122.1
1963	245.8	78.8	47.7	15.3	0.29	0.1	18.2	5.8	312.1
1964	264.1	77.4	54.6	16.0	0.31	0.1	22.3	6.5	341.4
1965	304.1	72.6	84.8	20.3	0.34	0.1	28.4	6.8	417.8
1966	428.2	73.7	119.4	20.5	0.30	0.2	32.6	5.6	580.6
1967	564.9	68.4	219.2	26.5	0.28	0.2	41.2	4.9	825.7
1968	885.7	74.2	261.9	21.9	0.23	0.1	45.7	3.8	1,193.6
1969	1,149.5	68.2	426.5	25.3	1.85	0.2	104.7	6.2	1,682.5
1970	1,650.2	70.7	518.0	22.1	15.88	0.8	149.6	6.4	2,333.8

資料：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1970)』에서 作成.

다음에 우리나라 生命保險中 個人保險에 있어서는 生存保險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이 保險은 個人保險契約中 約 75.7%(1970年度)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는 新契約이 잘 되는 分野이기도 하며 保險契約高도 純增一路에 있다. 그러나 個人保險中에서 生存保險이 占하는 比重은 若干씩 下落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死亡保險은 被保險者가 死亡하는 경우에만 保險金을 支給하는 生命保險의 種類이어서 그런지 一般加入者들한테 好感을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保險會社들 중에서도 取扱하지 않고 있는 會社들도 있으며 契約高의 增加도 신통치 못하여 이 保險은 現

(15) 韓國保險學會刊, 『保險學會誌』, 第3輯, p. 121.

在에 있어서는 全個人保險중 約 2.5% (1970 年度) 程度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다음에 養老保險은 被保險者가 保險滿期까지 生存해 있거나 途中에 死亡하는 경우 保險金을 支拂하는 種類로서 貯蓄과 保障이 모두 兼備되어 있는 理想的인 保險種類이므로 이 保險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歡迎을 받고 있으며 保險契約高는 每年 增加一路에 있다. 그러나 1970 年 現在 個人保險중에서 21.8%로서 約 2割程度의 構成比를 차지하고 있음에 不過하며 앞으로 全生命保險에서 個人保險의 比重이 增加되어 감에 따라서 이 養老保險의 比重도 漸次로 높어날 것으로 보이며 日本은 1968 年에 養老保險이 個人保險에서 占하는 比重이 56.5%에 달할 뿐만 아니라 獨逸, 佛蘭西,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의 유럽諸國에 있어서도 이 養老保險이 個人保險의 主宗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個人保險중 教育保險을 包含하는 生存保險이 主軸을 이루고 있고 이 養老保險은 生命保險중 約 20% 程度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다음에 우리나라 團體保險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이 團體保險은 官廳, 會社, 工場 등 職場의 從業員을 一括해서 被保險者로 하고 그 團體 또는 被保險의 代表를 契約者로 하는 保險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團體保險이 全生命保險의 保有契約高에서 占하는 比重이 70.7% (1970 年度)에 달하고 있다. 大體的으로 外國의 例가 個人保險의 比重이 團體保險보다 높거나 또는 半半 程度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團體保險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構成比의 比重이 緩慢하게 下落하고 있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 生命保險市場의 構造改善策이 이러한 點으로 부터도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公營生命保險

國民生命保險의 保險種目은 職場保險, 成人保險, 教育保險, 自立保險의 네 種類가 있으며 成人保險은 民營生命保險에 있어서의 養老保險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1970 年末 現在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保險契約高에 있어서 國民生命保險 全體의 4.4%를 占함으로써 最下位를 占하고 있다. 그리고 이 成人保險은 그 對象이 個人契約 為主이기 때문에 그 實績은 微弱한 狀態에 있다. 그러나 이 成人保險도 1961 年度에는 無慮 全體의 63.6%를 占하여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한 바 있으며 이 保險은 그 後 漸次로 그 比重이 減少되어 1965 年度에는 11.9%, 그리고 1970 年度에는 4.4%로 下落하여 最下位를 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教育保險은 成人保險에 이어 1957 年부터 販賣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 年末 現在 保險契約高에서 全體의 27.2%를 占하여 國民生命保險의 保險種目에서 第3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 保險도 1961 年度에 있어서는 全體의 35.3%를 占하여 國民生命保險의

成人保險과 더불어 主軸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 後 그의 比重이 減少되어 1965 年度에는 27.5%, 1970 年度에는 27.2%를 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教育保險은 民營生命保險의 教育保險과 農協生命共濟의 어린이希望共濟와의 사이에 競爭이 燥烈하게 벌어지고 있는 種目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團體保險이라고 볼 수 있는 職場保險은 1970 年末 現在 契約高에 있어서 全體의 34.9%를 占하여 最上位를 아직 차지하고 있다.

이 職場保險은 1961 年度에는 全體의 1.1%를 占하여 最下位였으나 1962 年 國民貯蓄組合法의 發効實施以後 急激히 增加하여 全體의 48.5%로 增加하여 最上位를 占하였으며 그 後 1965 年度에는 60.6%까지 增加하였다가 그 後 減少되어 1970 年度에는 34.9%를 차지하여 아직까지도 國民生命保險 가운데서 首位를 占하고 있다. 이것은 民營生命保險의 團體保險이 1970 年末 現在 70.7%를 占하여 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同一한 傾向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自立保險은 1966 年부터 처음으로 販賣되기 始作한 가장 最新의 業種으로 其他 세 가지 種目들보다 가장 成長率이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이 自立保險은 이 保險이 처음으로 시작된 1966 年度에는 全體의 3.8%를 占하여 最下位였으나 그 後 急速하게 增加하여 1970 年度에는 全體의 33.5%를 차지하여 國民生命保險 全體의 第 2 位를 占하게 되었다.

〈表 IV-16〉

國民生命保險의 種目別構成

(單位 : 千원)

年 度	職場保險		成人保險		教育保險		自立保險		計
	契約高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1961	7,790	1.1	504,186	63.6	280,277	35.3	—	—	792,253
1962	905,612	48.5	530,417	28.2	429,606	23.3	—	—	1,865,636
1963	1,363,225	58.9	366,236	15.9	583,732	25.2	—	—	2,313,193
1964	1,653,227	60.4	375,830	13.8	707,404	25.8	—	—	2,736,461
1965	2,229,488	60.6	435,324	11.9	1,013,930	27.5	—	—	3,678,742
1966	3,119,397	55.3	568,242	10.8	1,694,776	30.1	252,612	3.8	5,635,027
1967	3,657,549	43.4	707,867	9.3	2,379,150	27.8	1,664,958	19.5	8,409,524
1968	5,516,777	44.7	814,337	6.8	3,192,181	25.8	2,809,077	22.7	12,332,372
1969	6,802,963	39.5	863,245	5.2	3,849,716	22.3	5,672,028	33.0	17,187,951
1970	7,965,695	34.9	976,485	4.4	6,222,165	27.2	7,640,492	33.5	22,804,837

註：契約高는 年度末 現在 維持契約高임。

資料：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1970年度)』参考。

3) 組合生命保險

農業協同組合 生命共濟의 種目에는 生活安定共濟와 어린이希望共濟의 두 種類가 있으

여 이 중 生活安定共濟는 民營生命保險에서의 養老保險에 該當하며 이에 대해서 어린이 希望共濟는 民營生命保險에서의 教育保險에 該當한다.

下記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協生命共濟의 種目別構造는 生活安定共濟가 1970年末 現在 契約高에서 全體의 81.9%를 占하여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反해서 教育保險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 希望共濟는 1970年末 現在 全體의 18.1%를 占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이와 같이 農協生命共濟의 生活安定共濟가 1970年度에 81.9%라는 絶對的인 큰 比重을 占하고 있기는하나 1965年度에는 全體의 86.4%를 占하던 것이 그 後 1967年度에 89.1%까지 增加하였다가 그 後 漸次로 下落하여 1970年度에 81.9%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農協의 生活安定共濟(養老保險)의 경우 民營生命保險과 國民生命保險과는 달리 教育保險을 훨씬凌駕하고 있는 것은 生命共濟의 目的이 自體資金의 助成에 있기 때문에 長期保險에 注力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反해서 教育保險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 希望共濟는 1965年度에는 全體의 13.6%를 占하였으나 그 後 그 比重이 若干 減少되었다가 1967年度부터 다시 그 比重이 增加하기 시작하여 1970年度에는 全體의 18.1%를 占하게 되었다.

〈表 IV-17〉

農協의 生命共濟의 種目別構成

(單位: 千원)

區分 年度	生活安定共濟		어린이 希望共濟			計
	契約高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1965	1,386,930	86.4	217,160	13.6	1,604,090	
1966	23,705,270	89.9	2,634,570	10.1	26,339,840	
1967	34,396,380	89.1	4,179,205	10.9	38,575,585	
1968	37,550,180	88.8	4,704,420	11.2	42,254,600	
1969	42,412,200	80.0	10,601,076	20.0	53,013,270	
1970	57,684,260	81.9	11,614,240	18.1	69,298,500	

註: 契約高는 有効契約高임.

資料: 大韓再保險公社刊『保險年鑑(1970)年度』, 參考.

V. 損害保險市場의 構造

損害保險市場의 構造는 우선 첫째 機關別, 둘째 地域別, 세째 保險種目別로 分析한 다음 이를 生命保險의 경우와 같이 다시 民營保險, 公營保險, 組合保險別로 다시 構造分析하여 볼까 한다.

1. 機關別構造

1) 民營保險

東洋 新東亞 大韓 國際 高麗 第一 海東 安國 東方 汎韓 韓國自動車 大韓保證 등 12個 損害保險會社의 機關別構造를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보면 1970年度의 損害保險의 保險料收入總額 13,995百萬원中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會社는 韓國自動車保險會社로서 28.0%이고 다음이 東洋火災海上으로서 全體의 第2位를 占하여 11.9%, 第3位는 安國火災海上으로서 8.3%, 그 다음이 新東亞火災海上의 7.7%와 高麗火災海上의 7.7%, 그리고 大韓火災海上의 7.6%, 汎韓海上火災의 6.1%, 東方海上火災의 5.7%, 大韓保證의 5.5%, 國際損害의 3.7%, 第一火災海上의 4.8%, 海東火災海上의 3.0%의 順位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構造는 保險料收入面에서 볼 때 韓國自動車保險會社를 除外하고 생각한다면 대체로 나머지 11個會社에게 11.9%에서 3.0%사이에서 均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自動車와 東洋火災, 安國火災海上 세 會社의 合計額은 48.2%를 占하여 損害保險全體의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의 機關別構造의 變化를 뒤밟아 보면 이를 考察하기 위하여 첫째, 그동안 그의 構成比가 漸次로 增加하여 온 會社와 둘째, 대체로 同一한 比重을 維持하여 온 會社 세째, 그동안 그의 比重이 漸次로 減少하여 온 會社의 세 類型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보면,

첫째의 類型에 속하는 會社는 韓國自動車와 大韓保證保險, 東洋火災海上, 東洋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顯著한 것은 韓國自動車保險과 大韓保證保險을 들 수 있겠다. 韓國自動車保險은 1961年度에는 全體損害保險料收入總額에서 0.1%를 차지하고 있었음에 不過하였으나 10年後인 1970年度에 오면 全體損害保險料收入總額에서 28.0%를 占할 수 있을 程度로 急速度로 增加하여 왔다.

그 뿐만 아니라 大韓保證保險도 同會社가 設立된 1968年度에는 全體損害保險料收入의 0%를 차지하고 있었음에 不過하였으나 3年後인 1970年度에는 全體의 5%를 占할 程度로 急速하게 成長하여 왔다.

이에 대해서 第2의 類型이라고 볼 수 있는 그동안 대체로 同一한 比重을 維持하여 온 會社로서는 汎韓海上火災와 東方海上火災, 高麗火災海上, 新東亞火災海上 등이 있다. 汎韓은 1961年度에 全體의 6.0%를 占하였으나 1970年度에는 6.1%, 東方은 1961年度에는 4.5%이던 것이 1970年度에는 5.7%, 高麗는 1961年度에는 8.7%이던 것이 1970年度에는 7.7%, 新東亞도 1961年度에는 6.4%이던 것이 1970年度에는 7.7%로서 대체로 그동안 同一한 位置를 차지하여 왔다.

세계의 類型 즉 그동안 그의 比重이 減少되어 온 會社들로서는 大韓火災海上, 國際損害, 第一火災海上, 海東火災海上, 安國火災海上 등이 있다.

그 중 顯著한 것은 安國火災海上으로서 1961年度에는 全體의 30.0%를 占하고 있었으나 1970年度에는 이것이 8.3%로 減少하고 있다. 그 다음에 海東火災海上은 1961年度의 9.2%에서 3.0%로, 第一火災海上은 11.9%에서 4.8%로, 國際損害는 6.2%에서 3.7%로, 大韓火災海上은 10.1%에서 7.6%로 減少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의 機關別(會社別)構造는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韓國自動車保險을 除外하고는 대체로 11個 損害保險會社에게 11.9%에서 3.0% 까지 사이에서 均配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특히 損害保險會社中에서 韓國自動車保險과 大韓保證保險만이 그동안 그의 顯著한 比重의 增加를 보여 了을是 其他의 損害保險會社에 있어서는 그려 한 變化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表 V-1〉

損害保險의 會社別構造

	東洋		新東亞		大韓	
	保険料收入	構成比	保険料收入	構成比	保険料收入	構成比
1 9 6 1	37,252	6.9	34,318	6.4	54,449	10.1
1 9 6 2	67,244	9.5	40,165	5.7	63,670	9.0
1 9 6 3	84,333	8.3	65,564	6.4	99,980	9.8
1 9 6 4	117,255	7.6	56,121	3.7	158,986	10.4
1 9 6 5	241,582	8.9	109,899	4.0	293,736	10.8
1 9 6 6	410,633	8.4	213,523	4.4	501,540	10.3
1 9 6 7	731,302	11.4	357,498	5.6	477,014	7.4
1 9 6 8	1,160,227	13.5	598,550	6.9	605,099	7.0
1 9 6 9	1,392,973	12.7	992,748	9.0	920,816	8.4
1 9 7 0	1,671,301	11.9	1,080,496	7.7	1,065,619	7.6
<hr/>						
	國際		高麗		第一	
	保険料收入	構成比	保険料收入	構成比	保険料收入	構成比
1 9 6 1	33,576	6.2	47,014	8.7	64,096	11.9
1 9 6 2	32,597	4.6	69,984	9.9	82,231	11.6
1 9 6 3	67,808	6.6	95,621	9.4	99,282	9.7
1 9 6 4	101,097	6.6	154,998	10.1	126,410	8.2
1 9 6 5	171,275	6.3	259,549	9.5	186,972	6.9
1 9 6 6	319,587	6.6	477,447	9.8	326,475	6.7
1 9 6 7	395,123	6.2	619,925	9.7	412,083	6.4
1 9 6 8	466,798	5.4	757,228	8.8	580,225	6.7
1 9 6 9	395,179	3.6	1,011,166	9.2	621,242	5.7
1 9 7 0	513,753	3.7	1,083,640	7.7	677,706	4.8

	海 東	安 國	東 方			
	保 險 料 收 入	構成比	保 險 料 收 入	構成比	保 險 料 收 入	構成比
1 9 6 1	49,484	9.2	161,624	30.0	24,089	4.5
1 9 6 2	51,564	7.3	150,385	21.2	51,834	7.3
1 9 6 3	70,128	6.9	123,850	12.1	96,342	9.4
1 9 6 4	104,583	6.8	150,570	9.8	159,118	10.4
1 9 6 5	176,897	6.5	263,195	9.7	294,957	10.8
1 9 6 6	346,264	7.1	441,859	9.1	553,375	11.4
1 9 6 7	396,694	6.2	607,886	9.5	710,602	11.0
1 9 6 8	510,562	5.9	873,206	10.1	769,223	8.9
1 9 6 9	448,131	4.1	904,510	8.3	617,829	5.7
1 9 7 0	423,655	3.0	1,161,241	8.3	793,802	5.7

	汎 韓	韓 國 自 動 車	大 韓 保 證	合 計		
	保 險 料 收 入	構成比	保 險 料 收 入	構成比	保 險 料 收 入	構成比
1 9 6 1	32,283	6.0	350	0.1	538,535	100.0
1 9 6 2	76,258	10.7	23,364	3.2	709,296	100.0
1 9 6 3	126,344	12.4	92,438	9.0	1,021,690	100.0
1 9 6 4	172,805	11.3	231,437	15.1	1,533,380	100.0
1 9 6 5	229,074	8.4	497,414	18.2	2,724,550	100.0
1 9 6 6	296,232	6.1	990,336	20.1	4,877,271	100.0
1 9 6 7	414,327	6.5	1,296,121	20.1	6,418,575	100.0
1 9 6 8	479,665	5.6	1,820,552	21.2	8,621,460	100.0
1 9 6 9	530,852	4.9	2,812,449	25.9	10,923,394	100.0
1 9 7 0	859,179	6.1	3,924,920	28.0	13,995,925	100.0

註 : 保險料收入은 原受保險料임.

資料 : 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1970)』에 의하여 作成.

2) 公營保險

公營保險으로서 損害保險에 該當하는 것은 輸出保險뿐임으로 公營保險의 機關別構造를 考察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民營保險全體와 輸出保險을 比較하여 보기로 하겠다. 1969年 度에 있어서는 民營保險의 酒收保險料는 10,923百萬원인데 反해서 輸出保險의 그것은 4.5 百萬원으로서 全體의 0 %의 構成比를 차지함에 不過하였고 1970年 度에도 民營保險의 酒收保險料는 13,995百萬원인데 反해서 輸出保險의 그것은 11.1百萬원으로서 1970年 度에는 0 %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輸出保險은 損害保險市場에서 아직까지 微微한 位置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再保險公社 保有比率을 考察하여 보면 元受保險에 대한 再保險公社의 保有比率은 1969年 度와 1970年 度의 保險料收入을 中心으로 살펴 보면 1969年 度의 再保險公社 保有

〈表 V-2〉

公營保險과 民營保險의 構成

(單位: 千원)

	民營保險		輸出保險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1969	10,923,394	100.0%	4,555	0%
1970	13,995,925	100.0	11,147	0

註: 民營保險은 東洋, 新東亞, 大韓, 國際, 高麗, 第一, 海東, 安國, 東方, 汎韓, 韓國自動車, 大韓保證의 保險料收入임.

比率 10.9%이었으나 1970年度에는 이것이 10.1%로 減少되고 있다.

그의 主要한 原因은 火災保險은 1969年度의 11.7%에서 1970年度에 12.1%로, 特種保險은 1969年度의 5.1%에서 1970年度의 10.2%로 增加하고는 있으나 그 以上으로 海上保險은 1969年度의 15.7%에서 1970年度에 7.4%로, 그리고 自動車保險의 경우는 69年度의 17.3%에서 1970年度의 11.6%로 減少한 데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元受保險에 대한 再保險公社保有比率은 約 10%程度이고 이를 保險種別로 볼 때 火炎保險은 12.1%, 海上保險은 7.4%, 自動車保險은 11.6%, 特種保險은 10.2%이다.

〈表 V-3〉

再保險公社保有比率

(單位: 百萬원)

	元受保險		再保險公社保有		保有比率 (%)	
	保險金額	保險料	保險金額	保險料	1970	1969
火 災	633,623	3,000	51,229	362	12.1	11.7
海 上	823,160	4,331	97,874	320	7.4	15.7
自 動 車	129,388	3,925	—	457	11.6	17.3
特 種	319,021	3,044	7,965	312	10.2	5.1
合 計	1,905,192	14,300	157,068	1,451	10.1	—
1969 年度	1,329,579	11,443	119,981	1,250	—	10.9

資料: 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1970)』

3) 組合保險

組合保險의 機關別構造를 農業協同組合, 水產業協同組合, 韓國海運組合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農業協同組合은 全體의 54.2%를 占하여 가장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水產業協同組合으로서 全體의 43.1%를 차지하여 第2位이며 韓國海運組合은 不過 全體의 2.7%를 占하여 가장 微微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組合保險의 機關別構造의 變化를 뒤밟아 보면 먼저 農業協同組合은 1968年度에는 無慮 全體의 84.9%를 占하여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그 後漸次的으로 減少되어 1969年度에는 52.5%로 줄었다가 1970年度에는 5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水產業協同組合은 1968年度에는 全體의 4.3%를 占하여 最下位였으나 그 後 이것이 急速的으로 增加하여 1969年度에는 無慮 44.7%까지 그의 比重이 增加하였다가 1970年度에는 43.1%로 若干 減少하고 있다.

韓國海運組合은 1968年度에는 全體의 10.8%의 큰 比重을 占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그 後 漸次的으로 減少되어 1969年度에는 2.8%, 1970年度에는 2.7%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그동안 農業協同組合과 韓國海運組合의 比重은 漸次로 減少되어 온데 逆에서 水產業協同組合의 比重은 그 間 急速하게 增加되어 왔다.

그동안 組合保險의 機關別構造가 以上과 같이 變化하여 온 主要한 理由는 水產業協同組合에서 1969年度부터 漁船共濟가 새로 實施되어 이것이 1969年度에는 全體의 42.2%, 1970年度에는 40.4%란 큰 比重을 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業協同組合에 있어서도 火災共濟과 特殊家畜共濟가 1968~1970年度 사이에 全體에서 占하는 比重은 水產業協同組合의 漁船共濟 때문에 모다 減少하는 하고 있으나 그의 絶對額에 있어서는 해마다 大體的으로 增加를 보여 주고 있으며,

水產業協同組合의 火災共濟도 그 間 그의 比重은 漸次로 減少하고 있으나 그의 絶對額은 차츰 增加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韓國海運組合의 船舶共濟만은 그의 比重 뿐만 아니라 絶對額에 있어서도 모다 대체로 (1970年度의 絶對額만은 例外) 減少를 보이고 있다.

〈表 V-4〉 **組合保險의 機關別構造.** (單位 : 千원)

	組合保險의 機關別構造.				合計	
	農業協同組合	水產業協同組合	韓國海運組合		共濟料 및 分擔金收入	構成比
	共濟料收入	構成比	共濟料收入	構成比	分擔金收入	構成比
1968	236,443	84.9	12,024	4.3	29,937	10.8
1969	338,371	52.5	288,510	44.7	17,775	2.8
1970	407,890	54.2	324,451	43.1	20,695	2.7
					278,404	100.0
					644,656	100.0
					753,036	100.0

資料 : 大韓再保公社刊, 『保險年鑑(1970)』에 의하여 作成.

2. 地域別構造

1) 民營保險

먼저 火災保險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火災保險은 地方보다도 서울特別市나 釜山直轄市와 같은 大都市에 지나치게 偏重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契約件數를 基準으로 하는 경우 서울特別市는 全國의 火災保險契約件數의 無慮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釜山直轄市도 全國의 그것의 12.1%를 占하여 서울特別市와 釜山直

轄市를 합하여 都合 53.2%를 保有하여 過半數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除外한 全國의 其他地域은 全國의 火災保險契約件數의 46.8%를 占하고 있음에 不過한 實情에 있다.

保險契約高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에도 서울特別市는 全國의 火災保險契約高의 無慮 36.3%를 占하고 있으며 釜山直轄市도 全國의 그것의 15.3%를 차지하여 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 두 都市만으로서도 全國의 火災保險契約高의 51.6%를 保有하여 全國의 過半數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除外한 全國의 其他地域은 全國의 火災保險契約高의 48.4%를 保有하여 위의 兩大都市의 그것을 下廻하고 있다.

〈表 V-5〉 火災保險의 地域別構造 (單位: 百萬원)

地 城	契 約 件 數	構成比	契 約 高	構成比
서 울 特 別 市	226,793	41.1	891,344	36.3
釜 山 直 轄 市	66,773	12.1	373,677	15.3
其 他 地 域	258,819	46.8	1,186,622	48.4
計	551,985	100.0	2,451,643	100.0

註: 期間은 1963—1971임.

다음에 海上保險保險中 積荷保險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積荷保險의 保險料收入을 基準으로 할 때 輸出은 全體의 積荷保險料收入의 11.7%, 輸入은 그것의 77.4%, 統計上不一致가 10.9%로 構成되어 있어 輸入이 輸出에 비해 壓倒的으로 큰 比重을 占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積荷保險料收入의 큰 比重이 주로 輸入중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輸出에서는 積荷保險料中에서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下記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積荷保險의 保險料收入總額 가운데에서 가장 큰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日本地域으로부터의 輸入으로서 全體의 積荷保險料收入總額 가운데서 無慮 25.8%를 占하여 第1位이고, 第2位는 東部「아메리카」地域으로부터의 輸入으로서 全體의 17.0%, 第3位가 「유럽」地域으로부터의 輸入으로서 全體의 14.9%, 第4位가 西部「아메리카」로부터의 輸入으로서 7.9%, 第5位는 東南亞細亞로부터의 輸入으로서 5.8%이다. 以上에서 列舉한 것만을 合計한다손 치드라도 無慮 全體의 積荷保險料收入의 71.4%를 占하여 全體의 4분의3을 超박하고 있으며 나머지 地域들은 全體의 3.3%에서 0%사이에 分散되어 있다.

특히 輸出面에 있어서는 最高가 日本에 대한 輸出로서 全體의 3.3%, 그 다음이 「유럽」地

域에 대한 輸出이 3.1%이며, 輸出로부터 積荷保險料收入은 最高 3.3%—0.1%사이에 分散하고 있는 微微한 狀態에 있다.

<表 V-6>

積荷保險의 地域別構造

(單位: 千원)

地 域 別	件 數(A)	保險金額(B)	保 險 料(C)	平均料率(D)	構 成 比(E)
輸 出	51,664	166,949,475	1,098,158		11.7
日 本	15,447	72,000,712	305,495		3.3
臺 灣	1,322	1,794,318	11,272		0.1
香 港	4,195	9,774,381	64,618		0.7
東南亞細亞	4,170	8,106,925	93,672		1.0
中東亞細亞	374	829,860	7,844		0.1
오세아니아	690	1,176,008	7,195		0.1
아프리카	1,393	4,025,313	56,552		0.6
유럽	8,772	31,476,112	293,280		3.1
西部아메리카	4,916	12,405,375	81,055		0.7
東部아메리카	10,118	24,626,313	171,378		1.8
南部아메리카	267	734,158	5,797		0.1
輸 入	159,891	1,690,686,414	7,251,913		77.4
韓 國	2,526	39,282,266	98,275		1.2
日 本	114,416	714,372,347	2,421,451		25.8
臺 灣	982	32,483,690	205,636		2.2
香 港	4,975	11,142,377	55,368		0.6
東南亞細亞	5,484	163,927,133	541,953		5.8
中東亞細亞	86	21,513,805	50,566		0.5
오세아니아	767	17,898,787	73,161		0.8
아프리카	38	536,216	3,236		0
유럽	8,780	249,468,652	1,394,625		14.9
西部아메리카	5,202	166,173,751	738,69147.9		7.9
東部아메리카	16,539	269,197,879	1,601,901		17.0
南部아메리카	96	4,689,511	67,050		0.7
統計上不一致	12,164	430,145,886	1,021,300		10.9
合 計	650,085	2,27,781,775	9,371,371		100.0

註:1) 共同引受分은 1年으로 取扱.

2) 期間 1967. 4. 1—1971. 12. 31

資料: 韓國損害保險料率算定會刊, 『保險統計年報』 1962—1971,

2) 公營保險

輸出保險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輸出保險의 付保率은 0.85%이며 이는 輸出保險이 널리 活用되고 있는 英國의 30%, 日本의 40%, 西獨의 10%보다는 低位이나 「파키스탄」의 1%, 自由中國의 0.83% 및 「멕시코」의 0.7%들에 비하면 대체로 비슷한 付保率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輸出地域別로 付保率을 보면 「아시아」地域(주로 香港, 日本, 「싱가폴」등)이 1.05%

로 가장 높고 다음이 「유럽」地域(주로 西獨「스위스」「스웨덴」英國 등)의 1.02%, 北美地域의 0.7%의 順位로서 이를 總體的으로 볼 때 美國 英國 「캐나다」등의 先進國은 輸出「취티」協定을 맺고 있는 紡織物類의 入港禁止危險과 「나이제리아」「캐나다」등은 後進國에서 흔히 發生하는 關稅引上, 輸入禁止 등 非常危險에 對處하는 付保였다고 볼 수 있고 그 以外에도 D/A 輸出에 따르는 輸入者の 代金遲滯 또는 代金未回收 등 信用危險에 對處하는 付保였던 것으로 推定된다.⁽¹⁶⁾

다음에 輸出實績과 付保實績을 살펴 보면 亞細亞洲에 있어서는 輸出實績은 全體의 40.2%를 占하고 있는데 反해서 付保實績은 全體 付保實績의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同時に 「유럽」洲는 輸出實績은 全體의 輸出實績의 81.8%를 占하고 있는데 대해서 付保

<表 V-7>

輸出保險의 地域別構造

地 域	輸 出 實 繢		付 險 實 繢			付 保 率 (B/A)
	輸出額(A)	構 成 比 %	件 数	保 險 金 額(B)	構 成 比 %	
아 시 아 洲	404,381	40.28	143	4,235	49.36	1.05
日 本	235,882	23.50	45	2,071	24.14	0.88
香 港	38,541	3.84	83	1,976	23.03	5.13
성 가 폴	13,641	1.36	1	75	0.87	0.55
其 他	116,317	11.58	14	113	1.32	0.44
유 럽 洲	81,576	8.13	19	835	9.73	1.02
英 國	11,841	1.18	4	141	1.64	1.19
佛 蘭 西	1,905	0.19	1	10	0.12	0.52
西 獨	26,740	2.66	11	341	3.97	1.28
和 蘭	13,408	1.34	1	8	0.09	0.01
스 웨 덴	10,307	1.03	1	139	1.62	1.35
其 他	17,375	1.73	—	—	—	—
北 美 洲	491,006	48.91	86	3,438	40.07	0.70
美 國	475,165	47.34	85	3,417	39.83	0.72
캐 나 다	15,841	1.57	1	21	0.24	0.13
中 南 美 洲	4,938	0.49	—	—	—	—
아 프 리 카 洲	17,575	1.75	4	72	0.84	0.41
나이제리아	5,938	0.59	1	5	0.06	0.08
캐 나 다	1,024	0.10	1	13	0.15	1.27
其 他	10,613	1.06	2	54	0.63	0.61
大 洋 洲	4,332	0.44	—	—	—	—
合 計	1,003,808	100%	252	8,580	100%	0.85%

資料：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1970)』,

(16) 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 1970』, p. 315 參考。

實績은 全體付保實績의 9.7%를 占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北美洲는 輸出實績은 全體의 48.9%를 占하고 있는데 대해서 付保實績은 40.0%, 「아프리카」洲는 輸出實績은 全體의 1.7%를 占하고 있는데 대해서 付保實績은 全體의 0.8%를 占하고 있다. 따라서 亞細亞洲와 「유럽」洲는 輸出實績의 比重보다 付保實績의 比重이 큰 데 反해서 北美洲와 「아프리카」洲는 輸出實績의 比重보다 付保實績의 比重이 적다.

끝으로 輸出保險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保險契約件數에 있어서 가장 큰 保險契約件數를 가지고 있는 地域은 美國으로서 全體의 252件中 85件을 保有하여 第1位이며 그 다음이 83件으로서 香港이며, 그 다음이 日本의 45件, 西獨의 11件의 順位로 되어 있다.

이와 同一하게 保險金額面을 基準으로 하여 보아도 우리나라 輸出保險의 付保實績에 있어서도 美國은 全體의 契約保險金額의 39.8%를 占하여 第1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日本은 全體의 24.1%로 第2位, 香港은 全體의 23.0%를 占하며 第3位, 西獨도 全體의 3.9%를 차지하여 第4位를 占하여 保險契約件數와 契約保險金額面과를 比較하여 볼 때 日本과 香港이 順序가 若干 差이 있어 ullen 大體的으로 同一한 順序로 되어 있다.

3) 組合保險

(1) 農協의 損害共濟

農協의 損害共濟에는 韓牛 및 乳牛의 瘦死, 屠殺 및 法令에 의한 屠殺處分으로 입은 損害를 補償해 주는 特殊家畜共濟와 農協 各系統機關의 所有物, 購買販賣物資, 擔保物件, 政府管理糧穀 및 其他 任意加入物件에 대하여 實施하고 있는 火災共濟 그리고 預金者와 그 家族의 身體上의 災害나 財產上의 災害를 報償해 주는 預金者福祉의 세 種類가 있다. 農協損害共濟의 地域別構造를 共濟料收入을 基準으로 하여 살펴 보면 農協의 損害共濟는 農協의 生命共濟와는 달리 서울特別市와 釜山直割市의 兩大都市에 많이 集中되어 있고 上의 兩大都市 以外의 其他地域에 적게 集中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即 서울特別市(서울特別市에는 서울, 서울牛乳, 農協中央會包含)는 全國의 69.0%를 占하여 서울特別市 하나만으로서도 全國의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釜山直割市는 全國의 11.8%를 占하여 서울特別市와 釜山直割市의 兩都市만의 合計로서도 全國의 80.8%를 保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反해서 上의 兩大都市를 除外한 其他地域은 全國의 19.2%를 차지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서울特別市의 數值안에는 農協中央會의 火災共濟와 預金者福祉共濟 그리고 서울牛乳의 特殊家畜共濟가 이에 包含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萬一 農協中央會와 서울牛乳를 서울特別市에서 除外하고 農協의 損害共濟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본다면 서울特別市는 全國의 4.6%, 釜山은 全國의

7.4%를 占하여 都會 全國의 12.0%를 차지함에 不過하게 되고 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除外한 其他地域은 全國의 無慮 88.0%를 占하여 農協의 生命共濟의 경우와 같이 地方 center의 傾向을 나타내게 된다.

〈表 V-8〉 農協損害共濟의 都市·地方別構造 (單位: 百萬 원)

地 域	共 濟 料 收 入	構 成 比
서 울 特 別 市	435.6	69.0%
釜 山 直 轄 市	7.4	11.8
其 他 地 域	121.4	19.2
計	631.0	100.0

註: 1) 서울特別市 내에는 서울, 서울牛乳, 農協中央會包含.

2) 1973年 9月末 現在임.

다음에 農協損害共濟의 種目別·地域別構造를 살펴 본다면 먼저 特殊家畜共濟는 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는 하나도 없고 서울牛乳만이 全國의 15.2%를 占하고 있음에 不過하고 全部가 地方으로 偏重되어 있다.

이를 地域別로 살펴 보면 慶北은 全國의 16.9%로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서울牛乳로서 全國의 15.2%, 그 다음이 江原道로서 全國의 13.6%로 第3位이고, 京畿는 10.1%로서 第4位이고, 全南과 慶南은 각각 10.2%로서 第5位, 그리고 全北과 濟州는 각

〈表 V-9〉 農協損害共濟의 地域別構造

地 域	特 殊 家 畜		火 災		預 金 者 福 祉		合 论	
	共濟料收入	%	共濟料收入	%	共濟料收入	%	共濟料收入	%
京 畿	6	10.1	10	1.8	0.9	9.0	16.9	2.6
忠 北	5	8.5	13	2.3	0.3	3.0	18.3	2.9
忠 南	5	8.5	19	3.4	1.5	15.0	25.5	4.4
全 北	2	3.4	10	1.8	0.5	5.0	12.5	1.9
全 南	6	10.2	14	2.5	1.6	16.0	21.6	3.4
慶 北	10	16.9	29	5.2	1.0	10.0	40.0	6.3
慶 南	6	10.2	17	3.0	1.0	10.0	24.0	3.8
江 原	8	13.6	17	3.0	1.1	11.0	26.1	4.1
濟 州	2	3.4	1	0.1	0.1	0.1	3.1	0.9
서 울	—	—	8	1.1	1.5	15.0	9.5	1.5
釜 山	—	—	7	1.1	0.4	4.0	7.4	1.1
서 울 牛 乳	9	15.2	—	—	—	—	9.0	1.1
中 央 會	—	—	417	74.2	0.1	1.0	417.1	66.1
計	59	100.0	562	100.0	10.0	100.0	631.0	100.0

註: 1973年 9月 30日 現在數值임,

資料: 農協中央會共濟部刊, 「1973年度 共濟事業現況」에 의하여 作成.

각 3.4%로서 第6位의 順位로 되어 있다.

火災共濟는 農協中央會가 全國의 74.2%를 保有하여 全國의 4分之3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의 25.8%가 地方에 分散되어 있다. 農協中央會以外에 서울이 全國의 1.1%, 釜山直轄市가 全國의 1.1%를 占하고 있는 以外에 慶北이 5.2%로서 地方으로서 가장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忠南의 3.4%, 그 다음이 慶南과 江原道가 각각 3.0% 등의 順으로 地方에 分散되어 있다.

預金者福社도 서울의 15.0%와 農協中央會의 1.0%, 그리고 釜山直轄市의 4.0%를 除外하면 모두 地方으로 分散되어 있다. 그 중 가장 큰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全南의 16.0%, 忠南의 15.0%, 江原道의 11.0%, 慶南의 10.0%의 順으로 地方에 散在되어 있다.

(2) 韓國海運組合의 損害共濟

韓國海運組合의 損害共濟에는 船客共濟와 船舶共濟의 二種類가 있으며 同組合의 損害共濟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大體的으로 큰 港口라고 볼 수 있는 釜山, 木浦, 忠武, 仁川, 濟州 등에 많이 偏在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同損害共濟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全國에서 가장 큰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釜山의 42.2%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木浦로서 全國의 17.5%, 다음이 서울의 9.4%, 그 다음이 忠武의 7.9%, 仁川의 7.1%, 麗水의 6.1%, 濟州의 4.9%, 墨湖의 1.6%, 群山의 1.5%의 順位로 되어 있다.

다음에 船客共濟의 地域別構造도 釜山이 全國의 39.4%로서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表 V-10〉

海運組合損害共濟의 地域別構造

地 域	船客共濟		船舶共濟		合 計	
	分擔金	%	分擔金	%	分擔金	%
서 울	—	—	3,183	17.9	3,183	9.4
釜 山	6,287	39.4	7,964	44.8	14,251	42.2
仁 川	1,353	8.5	1,044	5.9	2,397	7.1
木 浦	3,405	21.3	2,500	14.1	5,905	17.5
麗 水	1,761	11.0	305	1.7	2,066	6.1
忠 武	1,905	11.9	762	4.3	2,667	7.9
群 山	221	1.4	240	1.4	461	1.5
昌 寧	90	0.6	440	2.5	530	1.6
浦 項	318	2.0	309	1.7	627	1.8
濟 州	622	3.9	1,025	5.7	1,647	4.9
計	15,966	100.0	17,775	100.0	33,741	100.0

註：1970年度數值임。

다음이 木浦의 21.3%, 忠武의 11.9%, 麗水의 11.0%, 仁川의 8.5%의 順位로 되어 있다.

船舶共濟도 釜山이 全國의 44.8%로서 首位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서울로서 全國의 17.9%를 차지하여 全國의 第2位를 占하고 있고, 第3位는 全國의 14.1%로서 木浦이고, 第4位는 仁川의 5.9%, 第5位는 濟州의 5.7%의 順位로 되어 있다.

3. 種目別構造

1) 民營保險

韓國도 損害保險의 種目別構造의 變化에 있어서는 世界各國의 一般的 傾向과 대체로同一한 傾向을 걷고 있다.

먼저 火災保險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火災保險은 그의 構成比가 1960年度에는 全體 損害保險料收入總額의 85.4%를 占하고 있었으나 1965年度에는 그의 構成比가 34.8%로 떨어지고 1971年度에는 21.5%로 下落하여 우리나라의 火災保險의 構成比가 外國에서 그의 例를 찾아보기 힘들 程度의 急速한 speed로 下落하여 왔음을 發見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海上保險도 1960年度에는 그의 構成比가 14.6%에 不過하였으나 1965年度에는 그의 構成比가 36.0%로 增加하였고 그後에는 그의 比重이 漸次로 下落하여 1971年度에는 그의 構成比가 27.4%까지 下落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海上保險의 比重이 最近 漸次로 遲減하는 傾向에 있는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海上保險의 1968年度에 있어서의 30.4%의 構成比는 美國의 3.6%, 獨逸의 5.2%, 佛蘭西의 3.6%, 日本의 13.2%와 比較해 볼 때 아직도 큰 規模에 뛰어나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에 反해서 우리나라의 特種保險은 그동안 매우 急速한 speed로 그의 比重이 增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特種保險은 1960年度에는 그의 實績이 하나도 없었고 1963年度에는 그의 構成比가 0.3%에 不過하였으나 1965年度에는 그것이 5.2%로 增加하고 그後 急速하게 그의 構成比가 늘어나서 1971年度에는 21.8%까지 增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特種保險의 發達은 新種商品의 開發이 活潑해짐에 따라 需要의 急速한 增加를 보이고 있는 데에 그의 主要한 原因이 있는 것 같다.

또 우리나라 自動車保險은 1960年度에는 하나의 實績도 없었으나 1965年度에는 그의 構成比가 24.0%로 增加하고 그後 急速의 成長을 이루하여 1971年度에는 無慮 29.3%로 增加하여 그間 어느程度 安定된 趨勢를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自動車保險도 어느정도 飽和狀態에 들어간 느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損害保險種目別構成은 外國과는 달리 어느정도 均衡을 維持하면서 發展해가는 安定된 段階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된다.

〈表 V-11〉

損害保險의 種目別構成(I)

(單位：百萬원)

年度 種目	1 9 6 2				1 9 6 3			
	契約高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火災保險	46,052	51.3	401	70.7	70,908	63.6	566	65.1
海上保險	41,523	46.3	146	25.7	36,557	32.8	197	22.6
自動車保險	2,076	2.4	21	3.6	1,021	1.0	91	10.5
特種保險	—	—	—	—	2,948	2.6	15	1.8
計	89,651	100.0	568	100.0	111,434	100.0	869	100.0
年度 種目	1 9 6 4				1 9 6 5			
	契約高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火災保險	86,207	46.1	532	42.3	117,154	40.5	716	34.8
海上保險	92,072	49.3	451	35.9	145,966	50.4	741	36.0
自動車保險	1,978	1.2	231	18.4	4,940	1.9	495	24.0
特種保險	6,421	3.4	42	3.4	21,033	3.2	108	5.2
計	186,678	100.0	1,256	100.0	289,093	100.0	2,060	100.0
年度 種目	1 9 6 6				1 9 6 7			
	契約高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火災保險	152,536	33.1	1,020	22.4	226,872	39.6	1,301	21.1
海上保險	240,900	52.2	1,446	31.8	240,244	41.9	1,340	21.7
自動車保險	6,780	1.6	981	21.5	16,533	3.0	1,296	21.0
特種保險	60,555	13.1	1,107	24.3	88,920	15.5	2,237	26.2
計	461,471	100.0	4,554	100.0	572,569	100.0	6,174	100.0
年度 種目	1 9 6 8				1 9 6 9			
	契約高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火災保險	289,547	30.6	1,724	19.3	399,392	31.9	2,469	20.9
海上保險	494,960	52.4	2,715	30.4	626,145	50.1	3,549	30.2
自動車保險	13,113	1.5	1,821	20.4	32,161	2.7	2,742	23.3
特種保險	146,528	15.5	2,669	29.9	191,806	15.3	3,006	25.6
計	944,148	100.0	8,929	100.0	1,249,504	100.0	11,766	100.0
年度 種目	1 9 7 0				1 9 7 1			
	契約高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契約高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火災保險	634,840	34.8	3,003	20.6	874,802	36.8	3,780	21.5
海上保險	833,244	45.7	4,655	31.9	839,233	35.3	4,815	27.4
自動車保險	50,910	4.0	3,925	26.9	200,561	8.5	5,140	29.3
特種保險	304,042	15.5	3,007	20.6	462,065	19.4	3,832	21.8
計	1,823,036		14,590	100.0	2,376,661	100.0	17,567	100.0

資料：韓國損害保險率算定會刊，『保險統計年報』에 依據하여 作成。

끌으로 지난 18年間의 損害保險分野의 全般的인 實績趨勢는 「유령」 및 其他國家에서는 火災 및 海上保險이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漸次的으로 減少되는 反面 自動車保險의 比重이 急激히 上昇하였으며 北美에서는 損害保險의 實績이 急激히 上昇하여 誓을 發見할 수 있다.

이의 한 趨勢들은 損害保險의 營業實績들이 漸次 自動車保險의 發達에 따라 左右된다는 것을 意味하며 1968年度 保險料收入은 「유령」과 其他國家에서는 自動車保險과 이를 除外한 餘他의 保險種目實績의 合計와 同一한 水準을 나타내고 있을 程度이다.

〈表 V-12〉

諸國의 種目別構成比의 變化

種目	年度	諸國의 種目別構成比의 變化		
		1950	1960	1968
火 災 保 險		34.3%	28.3%	19.6%
海 上 保 險		10.1	0.4	5.4
自 動 車 保 險		26.0	36.0	44.7
傷 害 및 賠償 保 險		29.6	29.3	30.3
計		100.0	100.0	100.0

註:1) 18個의 主要保險國 (벨기에, 덴마크, 獨逸, 佛蘭西, 伊太利,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알제리, 오스트랄리아, 브라질, 日本, 加拿다, 빅토리아, 뉴질랜드, 페루, 美國, 스위스)의 綜合數值임.

2) 期間은 1950—1968年間임.

(1) 火災保險

우리나라에서 現在 販賣되고 있는 火災保險의 種類로서는 火災保險, 月納火災保險, 分納火災保險의 세 種類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세가지 種類의 火災保險 가운데서 火災保險이 絶對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다.

먼저 火災保險을 保險料收入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1971年度 豈만 아니라 그동안 全火災保險중에서 100%의 比重을 維持하여 誓을 發見할 수 있다.

月納火災保險은 1965年度부터 처음으로 始作되어 今日에 이르고 있으나 그의 保險料收入은 1965年度에 23千원에 不過하던 것이 그 後 漸次로 增加하여 1969年度에는 1,027千원까지 增加하였다가 그 後 漸次로 減少되어 1971年度에는 309千원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分納火災保險이 火災保險 全體에서 占하는 比重은 그동안 繼續 0%線에 머물러 誓에 不過했다.

한편 分納火災保險도 1963年度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實施되었으나 그의 保險料收入도 1963年度에는 62千원에 不過했고 이것이 1965年度에는 158千원까지 增加하였다가 그 後 다시 繼續 減少되어 1970年度에 오면 그의 實績이 하나도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以上과 같은 세 種類의 火災保險이 販賣는 되고 있으나 月納火災保險과 分納火災保險은 그의 實績이 보잘것이 없거나 全然없는 狀態이고 火災保險 만이 自己의 口實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V-13〉

火災保險의 種目別構成

(單位: 千원)

	1962		1963		1964		1965		1966	
	保險料收入	構成比								
火災保險	401,304	100.0	565,617	100.0	531,956	100.0	715,838	100.0	1,019,403	100.0
月納火災保險	—	—	—	—	—	—	23	0.0	809	0.0
分納火災保險	—	—	62	0.0	71	0.0	158	0.0	99	0.0
計	401,304	100.0	565,679	100.0	532,027	100.0	716,019	100.0	1,020,311	100.0
1967		1968		1969		1970		1971		
	保險料收入	構成比								
火災保險	1,299,893	100.0	1,723,231	100.0	2,468,224	100.0	3,002,734	100.0	3,780,066	100.0
月納火災保險	830	0.0	821	0.0	1,027	0.0	568	0.0	309	0.0
分納火災保險	14	0.0	1	0.0	7	0.0	—	—	—	—
計	1,300,737	100.0	1,724,053	100.0	2,469,258	100.0	3,003,302	1.00	3,780,375	1.00

(2) 海上保險

海上保險을 積荷保險, 船舶保險, 運送保險의 세 種類로 나누어 보면 保險料收入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1971年度에서 보면 積荷保險이 全海上保險에서 56.2%를 占하여 가장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船舶保險으로서 40.2%이고, 運送保險은 全海上保險의 3.6%를 占有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다음 海上保險의 種目別構成의 變化를 살펴 보면 積荷保險은 1962年度에는 全海上保險의 89.8%를 占하고 있었으나 그後 그의 構成比가 漸次로 減少되어 1965年度에는 64.4%로 떨어지고 이것이 1971年度에는 다시 56.2%까지 減少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船舶保險은 1962年度에는 全海上保險中에서 10.2%를 占하였음에 不過하였으나 그後 漸次로 그의 比重이 增加되어 1965年度에는 35.1%로 增加하고 이것이 1971年度에는 40.2%까지 그의 構成比가 繼續 增加되어 왔다.

運送保險은 1965年度부터 實施된 以來 1965年度의 0.5%에서 1968年度의 2.0%까지 그의 構成이 增加되어 오다가 그後 漸次로 그의 比重이 減少되어 1971年度에는 3.6%까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現在 積荷保險과 船舶保險은 거의 半半의 比重을 維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海上保險의 種目別構成						(單位: 千원)	
年度	種目	1962		1963		1964		1965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積荷保險	131,291	89.8		127,964	65.1	333,845	74.1	477,074	64.4
船舶保險	14,808	10.2		68,617	34.9	117,114	25.9	259,808	35.1
運送保險	—	—	—	—	—	—	—	4,020	0.5
計	146,099	100.0		196,581	100.0	450,959	100.0	740,902	100.0
		1967		1968		1969		1970	
年度	種目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保險料收入	構成比
		765,371	57.1	1,668,896	61.4	1,967,568	55.4	2,736,402	58.8
積荷保險	557,797	41.6		1,016,088	37.4	1,559,111	43.9	1,890,840	40.6
船舶保險	16,846	1.3		30,174	2.0	22,570	0.7	27,398	0.6
計	1,340,014	100.0		2,715,158	100.0	3,549,249	100.0	4,654,640	100.0

(3) 自動車保險

우리 나라의 自動車保險을 自動車責任保險과 自動車任意保險, 外貨表示保險의 세 種目으로 整理하여 保險種目別構造를 살펴 보면 保險料收入을 基準으로 하는 경우 1971年度에 있어서 自動車責任保險은 全自動車保險의 86.9%를 차지하여 絶對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는 反面 自動車任意保險은 全體의 9.4%, 外貨表示保險은 全體의 3.7%의 보잘것 없는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다음 自動車保險의 種目別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自動車責任保險은 1963年度에는 全自動車保險의 79.6%를 占하고 있었으나 그 後 漸次로 그의 比重이 늘어나 1965年度에는 그것이 89.6%까지 增加하고 그 後 부터는 다시 그의 比重이 減少되어 1971年度에는 全體의 86.9%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全體의 自動車保險中 自動車責任保險의 比重이 큰 것은 自動車責任保險이 強制保險인데 主要한 原因이 있는 것 같다.

自動車任意保險은 1962年度에는 全自動車保險의 無慮 96.2%를 占하고 있었으나 強制保險인 自動車責任保險이 1963年度에 생겨난 다음인 1963年度에는 그의 比重이 全體의 17.6%로 떨어지고 그 後도 1965年度까지 繼續 그의 比重이 떨어졌다가 그 後 다시 增加되어 1968年度에 24.6%가 되었다가 그 後 다시 減少되어 1971年度에는 9.4%까지 떨어지고 있다.

한편 外貨表示保險은 1962年度에도 全體의 3.8%를 占하고 있었으나 1965年度에는 4.3%,

이것이 1971年度에는 3.7%가 되어 1962—1971年度까지 사이에 2.8%—5.7%사이를 增減하여 大體的으로 同一 比重을 繼續維持하여 오고 있다.

<表 V-15>

自動車保險의 種目別構成

	1 9 6 2		1 9 6 3		1 9 6 4		1 9 6 5		1 9 6 6	
	保險料收入	構成比								
責任保險	—	—	72,802	79.6	201,591	87.1	443,867	89.6	831,604	84.8
任意保險	19,833	96.2	16,097	17.6	22,544	9.7	31,614	6.1	115,467	11.7
外貨表示保 險	777	3.8	2,509	2.8	7,302	3.2	19,852	4.3	33,577	3.5
計	20,610	100.0	91,408	100.0	231,437	100.0	495,333	100.0	980,648	100.0
	1 9 6 7		1 9 6 8		1 9 6 9		1 9 7 0		1 9 7 1	
	保險料收入	構成比								
責任保險	995,241	76.8	1,300,071	71.4	2,008,975	73.2	2,989,903	76.1	4,468,269	86.9
任意保險	247,412	19.1	448,086	24.6	642,217	23.5	715,672	18.2	485,736	9.4
外貨表示保 險	53,433	4.1	72,396	4.0	90,445	3.3	219,350	5.7	185,576	3.7
計	1,296,086	100.0	1,820,553	100.0	2,741,637	100.0	3,924,925	100.0	5,139,581	100.0

(4) 特種保險

現在 우리나라에서 實施되고 있는 特種保險에는 保證保險, 機械保險, 責任賠償保險, 綜合保險, 長期貯蓄性保險, 其他 등이 있으며 이러한 特種保險의 種目別構造를 1971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보면 保險料收入을 中心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特種保險中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機械保險으로서 特種保險全體의 29.9%를 차지하여 約 3割 가까이를 保有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保證保險의 22.5%, 其他的 18.5%, 責任賠償保險의 14.9%, 長期貯蓄性保險의 8.4%, 綜合保險의 5.8%의 順位로 되어 있다.

다음에 우리나라 特種保險의 種目別構成의 變化를 살펴 보면 保證保險, 綜合保險은 그의 構成比가 漸次로 增加하여 왔으며 責任賠償保險은 그의 比重이 그동안 減少되어 왔고 機械保險과 長期貯蓄性保險 및 其他는 그의 構成比가 增減하고 있다.

먼저 保證保險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이 保險은 처음 始作되던 1963年度에는 全體의 特種保險에서 不過 0.1%를 占하고 있었음에 不過하던 것이 1965年度에는 21.7%, 1971年度에는 22.5%로 急速하게 成長되어 왔다. 이 保證保險이 그동안 이와 같이 急速하게 發展하게 된 것은 이 保險이 始作되던 1963年度에는 身元保證保險 한 種目만이 있었던 것이 1965年度에는 履行保證保險, 1968年度에는 割賦販賣, 1969年度에는 外國機關・貸出・納稅・外上販賣・支給契約 등의 새로운 種目들의 保證保險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綜合保險의 경우를 살펴 보면 이 綜合保險이 처음 實施되던 1965年度에는 全體의 特種保險중에서 0.4%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不過한데 그 後 이것이 繼續增加하여 1971年度에는 全體의 5.8%의 比重을 占하기에 이르렀다. 이 綜合保險이 그동안 發展할 수 있었던 것은 1965年度 以後 預金者·商工·住宅·動產·財產·團地 等의 綜合保險이 많이 생겨 났을 뿐만 아니라 預金者·住宅·動產·財產綜合保險 등이 크게 發展한 데에 主要한 原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責任賠償保險은 처음 始作되던 1965年度에는 全體의 6.4%를 占하였음에 不過하였으나 1966年度에는 이것이 77.1%까지 增加하였다가 그 後 漸次的으로 그의 比重이 減少되어 1971年度에는 全體의 14.9%까지 減少되고 있다. 그 原因은 責任保險에 속하는 賠償責任保險과 勤勞責任保險 두 種目이 모다 그의 比重 뿐만 아니라 絶對額에 있어서도 그동안 減少되어 왔기 때문이다.

機械保險은 1963年度에는 全體의 12.6%를 차지하였음에 不過하였으나 1965年度에는 42.7까지 增加하였다가 1971年度에는 다시 29.9%로 下落하고 있다. 그런데 이 機械保險이 우리나라 特種保險中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주로 組立保險에 依存하는 바 매우 크다. 이 組立保險은 1964年度에는 全體 特種保險에서 4.1%를 占하고 있었음에 不過한데 그 後 그의 比重이 漸次的으로 增加하여 1971年度에는 全體의 特種保險중 16.9%를 占하기에 이르렀다.

長期貯蓄性保險은 처음 시작되던 1965年度에는 全體의 特種保險중 0.6%를 占하였음에 不過한데 이것이 1967年度에는 0.1%까지 下落하였다가 그 後 다시 그의 比重이 增加하여 1971年度에는 全體의 8.4%까지 그의 比重이 增加하고 있다. 그런데 長期貯蓄性保險을 그동안 發展시킨 것은 家計綜合保險과 還給付交傷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其他의 特種保險(航空·傷害·旅行者·交通傷害·盜難·유리·團體·TV·마스크트·動物·原子力)은 처음 시작되던 1963年度에는 全體의 特種保險중 無慮 81.2%를 占하고 있었으나 그 後 그의 比重이 漸次로 減少되어 1966年度에는 全體의 2.7%까지 떨어졌다가 그 後 다시 增加되어 1971年度에는 全體의 18.5%까지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이 其他의 特種保險에는 航空·傷害·旅行者·交通傷害·盜難·유리·團體·TV·마스크트·動物·原子力 등 여러 種類의 特種保險이 現在 우리나라에서 販賣되고 있으나 航空保險을 除外한 여러 其他의 特種保險들은 全體의 0%—0.5% 程度의 微微한 存在에 놓여져 있고 航空保險만이 1971年度를 基準으로 할 때에 全體의 特種保險중 17.7%의 比重을 占하여 其他의 特種保險의 構成比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韓國保險市場의 構造分析

— 51 —

〈表 V-16〉

特種保險의 種目別構成

(單位：千 원)

年度 種目	特種保険料額別構成				(単位：千円)					
	1962		1963		1964		1965		1966	
	保険料收入	構成比	保険料收入	構成比	保険料收入	構成比	保険料收入	構成比	保険料收入	構成比
(1) 保 證			957	6.1	2,280	5.4	22,869	21.3	88,630	8.0
身 元			957	6.1	2,280	5.4	5,764	5.4	10,539	1.0
履 行			—	—	—	—	17,105	15.9	78,091	7.0
割 賦			—	—	—	—	—	—	—	—
販 賣			—	—	—	—	—	—	—	—
外 國			—	—	—	—	—	—	—	—
機 關			—	—	—	—	—	—	—	—
貸 納			—	—	—	—	—	—	—	—
外 上			—	—	—	—	—	—	—	—
販 賣			—	—	—	—	—	—	—	—
支 給			—	—	—	—	—	—	—	—
契 約			—	—	—	—	—	—	—	—
(2) 機 械			1,991	12.6	7,467	17.8	45,951	42.7	129,477	11.7
汽 車	・	機 械	1,991	12.6	5,746	13.8	29,750	27.6	22,800	2.1
組 建			—	—	1,721	4.1	5,813	5.4	72,320	6.5
(3) 實 賠			—	—	—	—	10,388	9.7	34,357	3.1
賠 勤			—	—	—	—	6,835	6.4	853,067	77.1
(4) 総 預			—	—	—	—	—	—	—	—
商 金			—	—	—	—	1,840	1.7	31,924	74.1
住 房			—	—	—	—	4,995	4.7	821,143	3.0
動 車			—	—	—	—	429	0.4	1,749	0.2
財 地			—	—	—	—	38	0.0	74	0.0
(5) 長期貯蓄性			—	—	—	—	341	0.3	248	0.1
長 期			—	—	—	—	50	0.1	63	0.0
全 額			—	—	—	—	—	—	1,364	0.1
家 計			—	—	—	—	—	—	—	—
還 給			—	—	—	—	—	—	—	—
付 交			—	—	—	—	—	—	—	—
傷 付			—	—	—	—	—	—	—	—
(6) 其 他			12,801	81.2	32,208	76.8	30,893	28.7	30,246	2.7
航 行			12,710	80.7	32,075	76.4	30,404	28.2	25,278	2.3
旅 行			91	0.5	132	0.4	384	0.4	4,644	0.4
交 通			—	—	—	—	—	—	—	—
盜 犯			—	—	—	—	—	—	—	—
弁 園			—	—	—	—	—	—	—	—
T			—	—	—	—	—	—	—	—
マ ス			—	—	—	—	—	—	—	—
動 動			—	—	—	—	—	—	—	—
原 子			—	—	—	—	—	—	—	—
計			15,749	100.0	41,955	100.0	107,604	100.0	1,106,909	100.0

年 度 稅 目	1 9 6 7		1 9 6 8		1 9 6 9		1 9 7 0		1 9 7 1	
	保 險 料 收 入	構 成 比								
(1) 保 證	149,168	6.7	289,642	10.9	885,947	29.5	852,586	28.4	861,854	22.5
身 元	11,350	0.5	18,518	0.7	39,395	1.3	53,161	1.7	71,348	1.9
履 行	137,818	6.2	261,051	9.8	340,895	11.3	246,580	8.3	299,694	7.8
割 部 販 賣	—	—	10,073	0.4	276,893	9.2	413,482	13.7	354,882	9.3
外 國 機 關	—	—	—	—	10,945	0.4	4,749	0.2	5,416	0.1
貸 出	—	—	—	—	210,034	6.9	59,582	2.0	45,420	1.2
納 稅	—	—	—	—	2,905	0.1	51,849	1.8	72,249	1.9
外 上 販 賣	—	—	—	—	4,880	0.2	23,193	0.7	11,015	0.3
支 給 契 約	—	—	—	—	—	—	—	—	1,830	0.0
(2) 機 械	286,636	12.8	445,276	16.7	333,566	12.0	686,449	22.6	1,146,243	29.9
汽 車・機 械	102,419	4.5	115,260	4.3	205,576	6.8	252,652	8.4	350,852	9.2
組 立	153,066	6.8	279,862	10.5	118,285	3.9	369,102	12.3	647,348	16.9
建 設	31,151	1.5	50,154	1.9	9,705	1.3	64,695	1.9	147,643	3.8
(3) 責 任	1,681,593	75.2	1,689,911	63.3	1,091,328	36.4	697,156	23.2	571,941	14.9
賠 償	122,026	5.5	239,079	9.0	188,078	6.4	99,641	3.3	150,253	3.9
勤 災	1,559,567	69.7	1,450,832	54.3	903,250	30.0	597,515	19.9	421,688	11.0
(4) 綜 合	11,908	0.5	153,258	5.7	143,143	4.8	199,501	6.7	221,153	5.8
預 金 者	48	0.0	644	0.0	5,089	0.2	8,039	0.3	14,522	0.4
商 工	1,518	0.0	22,569	0.8	2,379	0.1	1,924	0.1	1,214	0.1
住 宅	132	0.0	1,316	0.1	3,575	0.2	3,964	0.1	4,265	0.1
動 產	10,210	0.5	128,729	4.8	116,903	3.8	152,322	5.1	139,223	3.6
財 產	—	—	—	—	14,554	0.4	34,252	1.1	62,929	1.6
闢 地	—	—	—	—	43	0.0	—	—	—	—
(5)長期貯蓄性	2,783	0.1	4,997	0.2	251,367	8.4	140,306	4.8	320,163	8.4
長 期 火 災	2,723	0.1	4,997	0.2	8,367	0.4	8,197	0.4	18,758	0.5
全額還給	—	—	—	—	—	—	—	—	—	—
家計綜合	—	—	—	—	243,000	8.0	120,918	4.0	263,728	6.9
還給付交傷	—	—	—	—	—	—	11,191	0.4	37,677	1.0
(6)其 他	104,838	4.7	86,410	3.2	300,790	10.0	430,849	14.5	710,678	18.5
航 空	100,051	4.5	77,171	2.8	275,733	9.2	415,365	13.8	678,984	17.7
傷 害	2,762	0.1	6,966	0.3	7,756	0.2	7,787	0.3	18,160	0.5
旅 行 者	—	—	—	—	—	—	—	—	—	—
交通傷害	—	—	3	0.0	812	0.1	555	0.0	6,462	0.1
盜 難	1,109	0.1	1,715	0.1	5,351	0.1	5,786	0.2	6,575	0.2
유 리	9	0.0	19	0.0	87	0.0	144	0.0	126	0.0
團 體	—	—	533	0.0	736	0.1	842	0.1	1,121	0.0
T V	308	0.0	5	0.5	—	—	—	—	—	—
마 스 코 트	—	—	—	—	10,314	0.3	△180	0.0	△1,469	0.0
動 物	—	—	—	—	—	—	550	0.0	724	0.0
原 子 力	—	—	—	—	—	—	—	—	—	—
計	2,236,926	100.0	2,669,494	100.0	3,006,141	100.0	3,006,847	100.0	3,832,032	100.0

2) 公營保險

1972年度 現在 우리나라에서 販賣하고 있었던 輸出保險은 一般輸出保險, 輸出金融保險, 輸出어음保險,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 등이며 그러나 1970年度까지도 中·長期延拂輸出保險과 委託販賣輸出保險은 아직 實績이 하나도 없었으며 一般輸出保險과 輸出金融保險, 輸出어음保險만이 實績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輸出保險의 種目別構造를 保險料收入을 基準으로 하여 살펴 보면 1972年度에 있어서 輸出保險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輸出어음保險으로서 輸出保險 全體의 無慮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의 6.5%, 그리고 一般輸出保險의 0.1%의 順位로 봐어 있다.

다음 輸出保險의 種目別構成의 變化를 보면 輸出어음保險은 1969年度에는 輸出保險 全體의 0.6%를 占하고 있었음에 不過하였으나 1972年度에는 이것이 93.4%로 急速度로 增加하고 있고 이에 反해서 一般輸出保險은 1969年度의 48.8%에서 1972年度에는 0.1%로, 輸出金融保險은 1969年度의 50.6%에서 1972年度에는 그의 實績이 하나도 없을 程度로 急速하게 減少하고 있다. 끝으로 委託販賣輸出保險은 1970年度까지는 實績이 하나도 없었다가 1971年度에 와서 全體의 輸出保險중 0.7%를 차지하였다가 1972年度에는 다시 그의 實績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表 V-17>

輸出保險의 種目別構造

	保 險 金 額							
	1969	%	1970	%	1971	%	1972	%
一般輸出保險	721,560	58.9	533,206	20.8	16,503	0.4	48,383	0.4
輸出金融保險	491,722	40.1	1,177,110	46.2	18,270	0.4	—	—
輸出어음保險	12,129	1.0	826,598	33.0	4,370,973	98.7	11,478,847	96.1
中·長期延拂輸出保險	—	—	—	—	—	—	419,073	3.5
委託販賣輸出保險	—	—	—	—	23,636	0.5	4,465	0
合 計	1,225,411	100.0	2,546,914	100.0	4,429,382	100.0	11,950,768	100.0

	保 險 料 收 入							
	1969	%	1970	%	1971	%	1972	%
一般輸出保險	2,224	48.8	1,245	11.2	79	0.1	155	0.1
輸出金融保險	2,306	50.6	2,561	22.9	95	0.2	—	—
輸出어음保險	25	0.6	7,341	65.9	20,235	99.0	154,522	93.4
中·長期延拂輸出保險	—	—	—	—	—	—	10,789	6.5
委託販賣輸出保險	—	—	—	—	355	0.7	67	0
合 計	4,555	100.0	11,147	100.0	50,746	100.0	165,533	100.0

資料 : 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1972)』에 의하여 作成.

3) 組合保險

우리 나라의 組合保險의 種目別構造는 農業協同組合의 火災共濟, 特殊家畜共濟, 預金者福社와 水產業協同組合의 漁船共濟와 火災共濟, 漁具共濟, 韓國海運組合의 船客共濟와 船舶共濟으로 中心으로 해서 살펴 보면 여기서 組合保險의 種目別構造는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考察할 때 組合保險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農協의 火災共濟로서 全組合保險의 共濟料 및 分擔金收入總額의 44.9%를 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水產業協同組合의 漁船共濟로서 39.6%이며 위의 農協의 火災共濟와 水協의 漁船共濟의 두 種目만으로서도 無慮 全體의 84.5%를 占하여 우리나라 組合保險의 二大 大宗品目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農協의 特殊家畜共濟로서 全體의 8.1%, 韓國海運組合의 船舶共濟가 2.7%, 水協의 火災共濟의 2.6%, 韓國海運組合의 船客共濟가 2.1%의 順位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組合保險의 種目品構造는 주로 農協의 火災共濟와 水協의 漁船共濟 中心이고 餘他의 農協의 特殊家畜共濟와 水協의 火災共濟, 韓國海運組合의 船客共濟 船舶共濟는 大概 微微한

〈表 V-18〉 組合保險의 種目別構造 (單位: 千원)

年 度	農業協同組合					
	火災共濟		特殊家畜共濟		預金者福社	
	共濟料收入	%	共濟料收入	%	共濟料收入	%
1968	200,877	68.5	35,566	12.1	—	—
1969	272,562	41.2	65,809	9.9	—	—
1970	345,783	44.9	62,107	8.1	—	—
年 度	水產業協同組合					
	漁船共濟		火災共濟		漁具共濟	
	共濟料收入	%	共濟料收入	%	共濟料收入	%
1968	—	—	12,024	4.1	—	—
1969	269,312	40.8	18,698	2.8	—	—
1970	304,410	39.6	20,042	2.6	—	—
年 度	韓國海運組合					
	船客共濟		船舶共濟		合計	
	分擔金收入	%	分擔金收入	%	共濟料 및 分擔金收入	%
1968	15,017	5.1	29,937	10.2	293,421	100.0
1969	17,182	2.6	17,775	2.7	661,838	100.0
1970	15,966	2.1	20,695	2.7	769,003	100.0

狀態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우리나라 組合保險의 種目別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먼저 1968—1970年사이에 그의 構成比가 增加하고 있는 種目은 農協의 火災共濟뿐이고 同期間中 그의 構成比가 減少하고 있는 種目은 農協의 特殊家畜共濟와 水協의 漁船共濟, 火災共濟 그리고 韓國海運組合의 船客共濟, 船舶共濟이다. 그리고 農協의 預金者福祉와 水協의 漁具共濟는 1970年度까지는 그의 實績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同期間中 組合保險의 種目別構造는 그리 큰 變動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VI. 社會保險市場의 構造

우리나라의 社會保險은 最近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發展이 없었고 日帝下의 簡易生命保險業務를 이어 받은 國民生命保險에서 겨우 社會保險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음에 不過했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와서 各種의 社會保險關係法規가 制定됨으로써 韓國의 社會保險은 飛躍的인 發展을 이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1962年 1月의 船員保險法, 1962年 3月의 軍人保險法, 1963年 11月의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 및 產業災害補償保險法, 1963年 12月의 醫療保險法, 1973年 12月의 國民福祉年金法 등이 차례로 公布되고 現在 70年代의 失業保險의 實施를 위해서 準備중에 있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實施中에 있는 社會保險으로서는 保健社會部의 產災保險과 醫療保險, 國民福祉年金, 交通部의 船員保險, 國防部의 軍人保險, 總務處의 公務員年金, 大學의 醫療保險 등이 있으나 保健社會部 所管下의 國民福祉年金은 現在 實現段階에 있지를 못하고 交通部所管下의 船員保險은 韓國海運組合에서 船員共濟로 實施되어 이것은 앞서의 損害保險市場의 構造分析에서 組合保險으로 取扱한 바 있었고 또 大學의 醫療保險은 小規模로 大學自體에서 運營하고 있음으로 여기서는 우리나라 社會保險市場의 構造分析을 保健社會部의 產災保險과 醫療保險, 國防部의 軍人保險, 總務處의 公務員年金을 中心으로 考察하여 볼까 생각한다.

1. 機關別構造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機關別構造를 1971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이를 볼 때 總務處가 우리나라 全體의 社會保險중 77.0%를 占하여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保健社會部로서 全體의 18.1%를 차지하여 第2位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이 國防部로서 全體의 社會保險중 約 2.4%를 占하여 最下位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社會保險의 中心은 保健社會部가 아니라 아직 總務處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機關別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첫째로 그의 機關別比重이漸次로 增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保健社會部이며 둘째로 그의 比重이漸次로 減少되고 있는 것은 總務處와 國防部이다.

먼저 保健社會部의 경우를 살펴 보면 保健社會部는 產災保險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1964 年度에는 우리나라 全體의 社會保險中 不過 3.9%를 占하고 있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表 VI-1>

社會保險의 機關別·種目別構造

機關別		保健社會部				計
種目別		產災保險	醫療保險	收納費收入	%	
年度別		千萬	千萬	千萬	%	
1 9 6 1		—	—	—	—	—
1 9 6 2		—	—	—	—	—
1 9 6 3		—	—	—	—	—
1 9 6 4		75,279	3.9	—	—	75,279 3.9
1 9 6 5		227,832	11.1	—	—	227,832 11.1
1 9 6 6		472,426	19.4	6,133	0.3	478,559 19.7
1 9 6 7		737,932	25.2	10,041	0.3	808,033 25.5
1 9 6 8		1,148,169	22.2	12,161	0.2	1,160,330 22.4
1 9 6 9		1,840,761	24.3	19,700	0.4	1,867,310 24.7
1 9 7 0		2,398,826	18.3	42,168	0.3	2,440,994 18.6
機關別		總務處				合計
種目別		軍人保險	公務員年金			
年度別		保險料收入	%	歲入額	%	合計額 %
1 9 6 1		—	—	百萬	—	—
1 9 6 2		226,105	18.8	976	81.2	1,202,105 100.0
1 9 6 3		274,357	16.4	1,403	83.6	1,677,357 100.0
1 9 6 4		272,566	13.9	1,602	82.2	1,949,845 100.0
1 9 6 5		283,061	13.8	1,539	75.1	2,049,893 100.0
1 9 6 6		287,488	11.8	1,663	68.5	2,429,047 100.0
1 9 6 7		298,025	9.4	2,066	65.1	3,172,058 100.0
1 9 6 8		302,511	5.8	3,720	71.8	5,182,841 100.0
1 9 6 9		320,749	3.4	5,382	71.9	7,570,059 100.0
1 9 7 0		329,225	2.5	10,383	78.9	13,153,219 100.0

註: 1) 產災保險은 年度未收納額임.

2) 醫療保險은 年度別實績임.

3) 軍人保險은 保險料收入 1個人負擔十國庫負擔임.

4) 公務員年金은 年度別歲入額임.

1970年度에는 全體의 18.6%로 增加되고 있다.

이에 反해서 總務處는 1961年度에는 100%의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65年度에는 그의 比重이 全體의 75.1%로 떨어지고 이것이 1970年度에는 78.9%로 되어 있다.

이와 同一하게 國防部는 軍人保險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1962年度에는 全體의 社會保險 중 18.8%를 占하고 있었으나 1965年度에는 그의 比重이 13.8%로 減少되고 이것이 1970年度에는 다시 全體의 2.5%까지 떨어지고 있다.

2. 業種別・階層別構造

1) 公務員年金

먼저 公務員年金의 階層別構造를 職種을 中心으로 하여 살펴 보면 1973年度의 경우 年金適用人員을 基準으로 하여 考察하면 一般職은 全體의 45.2%를 占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教育公務員으로서 32.9%이고 그 다음이 雇傭員으로서 21.7%, 判檢事が 0.2%, 別定職이 0.05%의 順位로 되어 있다.

公務員年金의 職種別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一般職公務員은 1970年度에 全體의 48.8%를 占하였으나 1973年度에는 45.2%로 減少하고 있는데 反해서 教育公務員과 雇傭員은 1970年度에 각각 全體의 31.9%와 19.1%에서 1973年度에는 각각 32.9%와 21.7%로 增加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判檢事는 1970年度의 0.2%에서 1973年度의 0.2%로서 同一한 比重을 계속 維持하여 오고 있다.

〈表 VI-2〉

公務員年金의 職種別構造

	1970		1971		1972		1973	
	人員數	%	人員數	%	人員數	%	人員數	%
一般職	202,662	48.8	217,829	48.4	204,944	45.6	199,462	45.2
教育	132,359	31.9	139,917	31.1	147,347	32.7	145,341	32.9
雇傭員	79,332	19.1	91,272	20.3	90,312	21.4	95,597	21.7
判・檢事	1,040	0.2	905	0.3	879	0.3	796	0.2
別定職	—	—	—	—	—	—	204	0.05
計	415,393	100.0	449,923	100.0	449,428	100.0	441,400	100.0

資料：總務處

다음 公務員年金의 階層別構造를 退職給與額을 中心으로 하여 살펴 보면 1972年度의 경우 1級 3號 20年勤績의 경우 3,326,400 원의 退職一時金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全體合計의 37.1%에 該當하여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2甲 3號는 同期間 勤績에 2,432,000 원으로 全體의 27.1%, 3甲 5號는 同期間 勤績에 1,558,000 원으로 17.4%, 甲 8號는 同期

間 勤績에 894,000 원으로 9.9%, 5~8號는 同期間 勤績에 752,000 원으로 8.5%의 順位로 되어 있다.

〈表 VI-3) :

公務員年金의 賄賄別構造

	1969		1970		1971		1972	
	給與額	%	給與額	%	給與額	%	給與額	%
1級(3號)(20年)	2,022,900	36.5	2,428,800	37.1	2,798,400	36.6	3,326,400	37.1
2甲(3號)(20年)	1,380,700	28.5	1,899,150	29.6	2,184,600	28.5	2,432,000	27.1
3甲(3號)(20年)	994,950	17.9	1,193,940	18.2	1,373,130	17.9	1,558,000	17.4
4甲(8號)(20年)	509,190	9.2	509,840	7.8	700,590	9.1	894,000	9.9
5甲(8號)(20年)	431,310	7.9	516,780	7.9	593,670	7.9	752,000	8.5
計	5,539,050	100.0	6,548,510	100.0	7,650,390	100.0	8,962,400	100.0

註：給與額은 退職給與額임。

資料：總務處

2) 產災保險

전체 產災保險의 業種別構造를 살펴 보면 1969年 2月을 基準으로 하여 保険料收入을 中心으로 하여 볼 때 우리나라 產災保險중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業種은 製造業으로서 全體의 41.7%를 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鐵業으로서 33.8%를 차지하여 第2位, 그리고 第3位가 運輸通信業으로서 全體의 20.2%를 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電氣「까스」業의 3.6%, 「서어비스」業의 0.7%의 順位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產災保險은 製造業과 鐵業 두 業種만으로서도 全體의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運輸通信業까지 합친다고 하면 우리나라 產災保險全體의 무려 95.7%를 占하여 이 세 業種 中心이 되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產災保險의 業種別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製造業은 1964年度에는 우리나라 全體의 產災保險中에서 不過 21.3%를 占하고 있었음에 不過하였으나 이것이 1967年度에는 26.2%로 增加하고 다시 1969年 2月에는 全體의 41.7%로 增加하여 우리나라 產災保險의 業種중 第1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運輸通信業도 1965年度에는 全體의 10.1%를 占하고 있었음에 不過하였으나 1967年度에는 이것이 19.7%로 增加하고 이것이 1969年 2月에 오면 다시 全體의 20.2%로 增加하고 있다.

기예 反映은 鐵業은 產災保險의 차음 소속과는 1964年度에는 全體의 78.7%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產災保險의 業種중 第1位를 占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그 後漸次로 그의 比重이 減少되어 1967年度에는 51.6%로 下落하고 다시 1969年 2月에는 全體의 33.8%

까지 펼어지고 있다.

電氣까스業은 1965 年度에 全體의 3.5%의 比重을 占하고 있었던 것이 1969 年 2 月 現在도 3.6%의 比重을 보여 그 間別 큰 變動을 보여 주지 않고 있고 「서어비스」業은 1969 年度에 처음으로 그의 實績을 나타내어 1969 年 2 月 現在 全體의 0.7%의 比重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產災保險은 製造業만이 그의 比重이 漸次로 增加하고 있을 뿐 餘他의 業種들은 그의 比重이 遲減하고 있거나 또는 一定한 比重을 維持해 오고 있다.

<表 VI-4> 產災保險의 業種別構造 (單位 : 1百萬원)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2	
	保 險 料 收 入	%										
鐵　　業	59	78.7	148	64.9	263	55.6	412	51.6	488	42.6	120	33.8
製　　造　業	16	21.3	49	21.5	113	23.8	209	26.2	342	29.7	148	41.7
建　　設　業	—	—	—	—	—	—	—	—	—	—	—	—
電　　氣　　까　　스　業	—	—	8	3.5	17	3.7	20	2.5	30	2.6	13	3.6
商　　業	—	—	—	—	—	—	—	—	—	—	—	—
(金融·保險·不動產·都散賣)	—	—	—	—	—	—	—	—	—	—	—	—
運　　輸　　·　通　　信　業	—	—	23	10.1	80	16.9	157	19.7	288	25.1	72	20.2
서　　어　　비　　스　業	—	—	—	—	—	—	—	—	—	—	1	0.7
分　　類　　不　　能　業	—	—	—	—	—	—	—	—	—	—	—	—
計	75	100.0	228	100.0	473	100.0	798	100.0	1,148	100.0	355	100.0

資料：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月報』, 第 76 號, p. 6 參考.

3) 軍人保險

軍人保險의 軍別構造를 살펴 보면 이를 1967 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保險料收入을 中心으로 考察할 때 全國軍의 保險料收入과 國庫負擔과의 사이의 比重은 66.5% 對 33.5%로서 軍人保險의 收入總額中 全國軍의 保險料收入이 66.5%를 占하는 反面 國庫負擔이 33.5%를 차지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全國軍의 保險料收入總額中 陸軍이 全體의 54.3%를 占하여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空軍의 4.9%, 海軍의 4.4%, 海兵隊의 2.9%의 順位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軍人保險은 陸軍中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軍人保險의 軍別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 軍人保險의 收入總額中의 國庫負擔의 경우를 살펴 보면 이는 1962 年度에는 全體의 收入總額中 33.2%를 占하고 있었으나 1967 年度에는 全體의 33.5%를 차지하여 그 比重에 있어서는 別 큰 變化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陸軍도 1962 年度의 54.8%에서 1967 年度에 54.3%, 海軍도 1962 年度에 4.4%에서 1967 年度에 4.4%, 空軍도 1962 年度에 5.0%에서 1967 年度에 4.9%, 海兵隊도 1962 年度의 2.6%에서 1967 年度에 2.9%로서 1962—1967 年 사이를 볼 때 우리나라 軍人保險의 軍別構造는 별다른 큰 變化를 보여 주지 않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表 VI-5> 軍人保險의 軍別構造 (單位: 千원)

	陸	軍	海	軍	空	軍	海	兵	隊	小	計	國	庫	負	擔	合	計											
	保	險	料	收	入	保	險	料	收	入	保	險	料	收	入	金	額	%	保	險	料	及	國	庫	負	擔	%	
1962	123,804	54.8	9,888	4.4	11,258	5.0	5,981	2.6	150,931	66.8	75,174	33.2	226,105	100.0														
1963	151,251	55.1	11,126	4.1	13,566	4.9	7,214	2.7	183,157	66.8	91,200	33.2	274,357	100.0														
1964	145,087	53.2	12,271	4.5	13,960	5.1	7,390	2.8	178,708	65.6	93,858	34.4	272,566	100.0														
1965	151,318	53.5	13,482	4.8	14,249	5.0	8,220	2.9	187,269	66.2	95,792	33.8	283,061	100.0														
1966	158,462	55.1	12,582	4.4	13,977	4.9	8,608	3.0	193,629	67.4	93,858	32.6	287,487	100.0														
1967	279,922	54.3	59,349	4.4	67,010	4.9	37,414	2.9	893,695	66.5	449,882	33.5	1,343,577	100.0														

資料：援護處資料에 의해서 作成。

다음에 軍人保險의 階層別構造를 職種을 中心으로 하여 살펴 보면 1966 年度의 경우 將校는 全體의 59.4%를 占하여 가장 크고 다음이 士兵으로서 全體의 40.6%를 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軍人保險의 加入人員은 將校가 約 60%, 士兵이 約 40% 程度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軍人保險의 階層別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將校는 1962 年度의 56.8%에서 1966 年度에는 59.4%로 그의 比重이 약간增加되고 있는 것이 보이나 5 年平均을 취하여 보면 57.0%로서 별다른 變動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士兵도 1962 年度에는 全體의 43.2%에서 1966 年度에는 40.6%로서 그간 그의 比重이 약간下落하고 있는 것이 보이나 그것도 5 年平均

<表 VI-6>

軍人保險의 階層別構造

	將		校		士		兵		合		計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1 9 6 2		31,476	56.8		23,908	43.2		55,384	100.0			
1 9 6 3		2,136	61.4		1,342	38.6		3,478	100.0			
1 9 6 4		5,042	47.5		5,565	52.5		10,607	100.0			
1 9 6 5		5,614	64.5		3,083	35.5		8,697	100.0			
1 9 6 6		7,209	59.4		4,913	40.6		12,122	100.0			
計		51,477	57.0		38,811	43.0		90,288	100.0			

註：年度別加入數值임。

을 취하여 보면 43.0%로서 그동안 별다른 變動이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軍人保險은 軍別構造에 있어서나 階層別構造에 있어서 보다 그의 構造變化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그의 特色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4) 醫療保險

우리나라 醫療保險의 現在의 適用對象業種으로서는 湖南肥料株式會社의 醫療組合과 凤鳴鑛業의 醫療組合, 釜山青十字의 醫療組合만이므로 이 세 醫療組合을 中心으로 그의 構造를 살펴 보면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保險料收入을 中心으로 考察하면 釜山青十字醫療組合이 全體의 52.8%를 占하여 우리나라 醫療保險중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湖南肥料가 24.5%로서 第2位이고 그 다음이 凤鳴鑛業으로서 22.7%로서 가장 적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醫療保險의 業種別業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釜山青十字는 1968年度까지는 하나의 實績도 없었으나 1969年度에는 全體의 20.6%를 占하게 되고 이것이 1970年度에는 다시 52.8%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醫療保險에서 第1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反하여 湖南肥料는 1965年度에는 우리나라 醫療保險에서 100%라는 絶對的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1967年度에는 60.4%, 1970年度에는 다시 24.5%로 下落하고 있다.

이와 같이 凤鳴鑛業도 1966年度에는 全體의 37.7%를 占하고 있었던 것이 1970年度에는 22.7%로 그의 比重이 떨어졌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醫療保險은 釜山青十字가 約 切半程度를 차지하고 나머지 半程度를 湖南肥料와 凤鳴鑛業이 占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表 VI-7>

醫療保險의 業種別構造

年 度	湖 南 肥 料		鳳鳴黑鉛鑛業		釜山青十字		合 計	
	保險料收入	%	保險料收入	%	保險料收入	%	保險料收入	%
1965	304	100.0	—	—	—	—	304	100.0
1966	3,076	62.3	1,861	37.7	—	—	4,937	100.0
1967	4,442	60.4	2,917	39.6	—	—	7,359	100.0
1968	5,036	62.0	3,083	38.0	—	—	8,119	100.0
1969	5,446	43.1	4,595	36.3	2,606	20.6	12,647	100.0
1970	6,186	24.5	5,735	22.7	13,318	52.8	25,239	100.0

다음 우리나라 醫療保險의 紿與對象構造를 살펴 보면 醫療保險의 紿與對象은 被保險者와 扶養家族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각각 다시 年間延人員과 月平均人員으로 나누

어 생각할 수 있겠으나 構造를 比較하려는 그 數值에 別 큰 差異가 없으므로 年間延人員을 中心으로 比較하여 볼까 한다.

먼저 1968年度의 경우 湖南組合은 被保險者 對 扶養家族은 20.2% 對 79.8%인데 대체서 鳳鳴組合은 18.4% 對 81.6%로서 兩組合을 볼 때 被保險者는 約 20% 對 扶養家族은 約 80%를 占有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것은 紿與對象構造에서 살펴 보아도 1965—1968年 사이 별다른 變化를 보여주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表 VI-8>

醫療保險의 紿與對象構造

年度別	組合別	被保險者				扶養	
		年間延人員	%	月平均人員	%	年間延人員	%
1965	湖南組合	683名	22.1	341名	22.0	2,413名	77.9
	湖南組合	6,780	21.7	565	21.7	24,435	78.3
1966	鳳鳴組合	5,624	19.1	625	18.9	23,777	80.9
	湖南組合	8,625	20.5	718	20.5	33,366	79.5
1967	鳳鳴組合	7,683	18.6	640	18.7	33,510	81.4
	湖南組合	7,925	20.2	660	20.3	31,223	79.8
1968	鳳鳴組合	6,956	18.4	579	18.4	30,778	81.6
	累計	44,276				179,502	

年度別	組合別	家族		合計			
		月平均人員	%	年間延人員	%	月平均人員	%
1965	湖南組合	1,206名	78.0	3,096名	100.0	1,547	100.0
	湖南組合	2,036	78.3	31,215	100.0	2,601	100.0
1966	鳳鳴組合	2,642	81.1	29,401	100.0	3,267	100.0
	湖南組合	2,780	79.5	41,991	100.0	3,498	100.0
1967	鳳鳴組合	2,792	81.3	41,193	100.0	3,432	100.0
	湖南組合	2,602	79.7	39,148	100.0	3,262	100.0
1968	鳳鳴組合	2,564	81.6	37,734	100.0	3,143	100.0
	累計			223,778			

資料：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月報』, 第75號, p. 8에 의하여 作成.

3. 種目別構造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種目別構造를 주로 保險料收入 (產災保險은 收納額, 公務員年金은 歲入額)을 中心으로 考察하여 보면 1970年度의 경우 우리나라 社會保險中에서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公務員年金으로서 全體의 社會保險의 保險料收入總額 가운데에서 無慮 78.9%를 차지하여 全體의 4分의 3以上을 超過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產災保險으로서 全

體의 18.3%를 占하여 第2位, 그 다음이 軍人保險의 2.5%, 醫療保險의 0.3%의 順位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社會保險의 構造는 公務員年金과 產災保險 두 種目만으로서도 全體의 無慮 97.2%를 占하여 이것 中心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두 種目以外의 社會保險은 軍人保險의 2.5%, 醴療保險의 0.3%로서 우리나라 全體의 社會保險중 보잘것 없는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다음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種目別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 公務員年金은 1961 年度에는 全體의 社會保險中 100%의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62年度에는 軍人保險, 1964年度에는 產災保險, 1966年度에는 醴療保險이 漸次로 새로 생겨남에 따라서 그의 比重이 漸次로 減少되어 1965年度에는 全體의 75.1%로 下落하고 1970年度에는 78.9%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公務員年金은 우리나라 社會保險中에서 아직까지는 絶對的인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의 比重이 漸次的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同一하게 軍人保險도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1962年度에는 全體의 社會保險中에서 無慮 18.8%를 占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1965年度에는 13.8%로 減少되고 1970年度에는 다시 2.5%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에 反해서 產災保險은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1964年度에는 全體의 社會保險中 3.9%를 占하였음에 不過하였으나 이것이 1965年度에는 11.1%로 增加하고 다시 1970年度에는 全體의 18.3%까지 그의 比重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醴療保險은 이것이 처음으로 始作되던 1966年度에는 全體의 0.3%를 占하고 있었으나 1970年度 現在도 全體의 0.3%를 차지하여 그동안 이 保險은 별로 큰 變動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1) 公務員年金

公務員年金은 年金給與의 期間을 基準으로 하여 이를 分類한다면 短期給與와 長期給與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短期給與에는 療養費, 健康診斷費, 療養一時金, 分娩費, 傷病手當, 分娩手當, 菲祭費 등이 包含되고 長期給與에는 退職一時金, 障害年金, 障害補償金, 遺族扶助金, 遺族一時金 등이 包含된다.

公務員年金의 種目別構造를 우선 期間別로 살펴 보면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給與金額을 中心으로 하여 考察하면 短期給與는 公務員年金 給與總額의 7.1%를 占하고 있음에 不過한데 長期給與는 92.9%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公務員年金은 長期給與 中心으로 運營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公務員年金의 期間別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短期給與는 1965年度에는 約 35.7%를 占하고 있었으나 그 後 漸次로 그의 比重이 減少되어 1970年度에는 7.1%까지 減少하고 있으며 이에 反해서 長期給與는 1965年度에는 全體의 64.3%였으나 1970年度에는 이 것이 92.9%까지 增加하고 있다.

<表 VI-9>

公務員年金의 期間別構造

年 度 別	短 期 給 與			長 期 給 與			計		
	件 數	金 額	%	件 數	金 額	%	件 數	金 額	%
1 9 6 5	50,899	209,275	35.7	16,411	376,285	64.3	67,310	585,561	100.0
1 9 6 6	45,696	209,883	26.2	17,498	589,815	73.8	63,194	799,698	100.0
1 9 6 7	14,193	192,384	11.8	18,040	1,433,571	88.2	32,233	1,625,956	100.0
1 9 6 8	28,379	193,928	4.4	31,836	4,191,138	95.6	60,215	4,385,067	100.0
1 9 6 9	15,715	205,212	3.8	34,274	5,111,438	96.2	49,989	5,316,651	100.0
1 9 7 0	12,153	253,194	3.2	38,202	7,536,437	96.8	50,355	7,789,630	100.0
計	12,153	1,510,477	7.1	268,558	19,851,723	92.9	552,703	21,362,198	100.0

資料：大韓再保險公社刊,『保險年鑑(1970)』参考。

다음에 公務員年金의 種目別構造를 살펴 보면 公務員年金은 退職給與, 養老給與, 分娩給與, 遺族給與, 其他給與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公務員年金의 種目別構造는 1969年度를 保險給與額을 中心으로 해서 볼 때 退職給與가 全體의 90.9%를 占하여 가장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遺族給與로서 全體의 4.9%, 其他給與가 3.5%, 分娩給與는 0.7%의 順位로 되어 있고 養老給與는 그의 實績이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公務員年金은 退職給與中心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表 VI-10>

公務員年金의 種目別構成

(單位 : 千원)

退 職 給 與	養 老 給 與		分 婦 給 與		遺 族 給 與		其 他 給 與		合 計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1969 4,835,497	90.9	—	— 24,637	0.7	265,346	4.9	191,171	3.5	5,316,651	100.0

註：金額은 『保險給與額』임.

資料：1969年度『保險年鑑』.

2) 產災保險

產災保險의 種目別構造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 產災保險을 1970年度를 基準으로 保險給與額을 中心으로 살펴 보면 產災保險의 種目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療養給與로서 全體의 產災保險중 無慮 48.2%를 차지하여 約 過半數를 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遺族給與로서 22.9%, 그 다음이 休業給與로서 18.8%이고 또 그 다음이 障害給與의 7.6

%, 葬祭給與의 2.5%의 順序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產災保險은 療養給與와 遺族給與, 休業給與中心이라고 볼 수 있다.

產災保險의 種目別構造의 變化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 產災保險의 種目別構成은 그동안 각 種目이 별로 큰 變動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療養給與는 1964年度의 40.7%에서 1970年度의 48.2%, 遺族給與는 1964年度의 33.8%에서 1970年度의 22.9%, 休業給與는 1964年度의 20.6%에서 1970年度의 18.8%, 障害給與는 1964年度의 1.2%에서 1970年度의 7.6%, 葬祭給與는 1964年度의 3.2%에서 1970年度의 2.5%이다.

<表 VI-11>

產災保險의 種目別構成

(單位 : 千원)

給與別 年度別	療養給與		休業給與		障害給與		遺族給與		葬祭給與		合計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964	10,261	40.7	5,185	20.6	447	1.2	8,546	33.8	769	3.2	25,210	100.0
1965	114,511	56.4	39,513	19.4	7,061	3.7	38,163	18.8	3,535	1.7	202,784	100.0
1966	242,382	53.5	89,090	19.6	28,225	6.2	85,209	18.8	7,853	1.9	452,761	100.0
1967	309,295	53.1	125,247	21.5	36,418	6.2	101,417	17.4	9,566	1.8	581,945	100.0
1968	452,300	53.9	172,344	20.5	56,759	6.7	143,015	17.1	13,555	1.8	837,976	100.0
1969	665,614	50.9	253,658	19.3	88,813	6.8	272,076	20.8	26,379	2.2	1,306,542	100.0
1970	882,462	48.2	344,288	18.8	140,442	7.6	420,298	22.9	41,481	2.5	1,828,972	100.0

註: 金額은 保險給與額임.

資料: 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年鑑 (1970)』.

3) 軍人保險

軍人保險은 ① 中士以上의 軍人, ② 保險에 加入한 淮士官 또는 下士官으로서 幹部候補生이 된 者, ③ 이미 加入한 保險을 轉移 또는 除籍後에도 繼續고자 하는 者 등으로 이들에 대해 死亡 或은 轉移 後 本人과 家族의 生活安定, 福祉向上, 軍事援護對象者の 定着貸付金 助成 등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保險은 특히 保險의 種類가 10年滿期의 單一種目으로 保險金은 1口座當 5萬 원으로 10年滿期가 되었을 때에는 保險金全額을 支給토록 하고 있어 定期保險의 役割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軍人保險의 種目別分析은 있을 수 없다.

4) 醫療保險

끝으로 醫療保險의 種目別構造를 살펴 보면 醫療保險에는 療養給與, 分娩給與, 葬祭給與 등의 種目이 있으며 이들의 여러 保險種目中 1970年度에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療養給與로서 全體의 98.7%를 차지하여 絶對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分娩

給與의 0.9%, 葬祭給與의 0.4%의 順位로 되어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醫療保險은 療養給與中心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醫療保險의 種目別構成의 變化를 살펴 보면 여기서 1969年度와 1970年度를 比較해 볼 때 療養給與는 1969年の 97.1%에서 1970年度의 98.3%로 그의 比重이 增加하고 있는데 反해서 分娩給與는 1969年度의 2.3%에서 1970年度의 0.9%로, 그리고 葬祭給與도 1969年度의 0.6%에서 1970年度의 0.4%로 減少되고 있다.

<表 VI-12>

醫療保險의 種目別構成

(單位 : 千원)

年 度 別	療養給與		分娩給與		葬祭給與		合 計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1965	286	90.7	23	7.3	6	2.0	315	100.0
1966	4,175	90.2	362	7.8	92	2.0	4,629	100.0
1967	6,121	91.9	429	6.4	109	1.7	6,659	100.0
1968	8,675	95.2	330	3.6	108	1.2	9,113	100.0
1969	15,354	97.1	375	2.3	74	0.6	15,803	100.0
1970	33,731	98.7	334	0.7	84	0.4	34,150	100.0

註: 金額은 保險給與額임.

資料: 大韓再保險公社刊, 1969年度, 1970年度『保險年鑑』 및 『保險月報』, 第75號에 의하여
작成.

VII. 結 論

1. 우리나라 保險市場은 대체로 生命保險市場, 損害保險市場, 社會保險市場으로 均等하게 配分되어 있다(1970年度의 경우 生保市場 35.1%, 損保市場 33.2%, 社保市場 31.1%).

2. 우리나라 生·損保市場構造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生保市場이 損保市場에 비해서 크다.

3. 우리나라是 自國의 國民所得에 대한 保險料가 占하는 比率은 1970年度에 있어서 生保가 0.56%, 損保가 0.55%로서 先進國에 비해서 매우 低位에 있으며 兩比率은 비슷하다.

4. 우리나라의 保險料成長率은 그동안 外國에서도 볼 수 없을 程度로 急速하게 增加하여 왔다. 1960—1970年間의 11年間에 年平均 保險料增加率은 無慮 43.0%의 높은 成長率을 示顯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保險成長率은殆半의 國家와 같이 自國의 經濟成長率을 超過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保險種類別成長率은 生命保險의 경우가 其他 保險種類의 경우보다 一層急速하게 成長하여 왔으며 그 다음이 社會保險이고 그 다음이 損害保險의 順位로 되어 있다. 1962—1970年間의 年平均 成長率은 51.4%, 損害保險成長率은 40.3%, 社會保險成長率은

42.6%이다.

6. 우리나라의 生命保險의 種目別成長率은 1963—1970年の 8年間 養老保險이 年平均 184.5%로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死亡保險의 93.8%, 國民生命保險의 87.0%, 生存保險의 50.2%, 團體保險의 45.6%의 順位로 되어 있다.

7. 우리나라 損害保險의 種目別成長率은 1963—1970年の 8年間 가장 急速한 增加率 보이고 있는 것은 特種保險으로서 年平均 106.3%이고 그 다음이 自動車保險의 93.5%, 海上保險의 43.7%, 火災保險의 37.6%의 順으로 되어 있다.

8.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種目別成長率은 1962—1970年の 8年間 產災保險이 年平均 增加率 85.6%로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醫療保險의 65.2%, 公務員年金의 39.4%, 軍人保險의 2.7%의 順位로 되어 있다.

9. 民營生命保險은 1961—1970年 사이에 他律的으로 크게 成長되었으며 우리나라 生命保險中 個人保險에 비해서 團體保險이 壓倒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이 그의 特色이기도 하다. 즉 1970年度에 있어서 團體保險의 比重은 아직 90.7%를 占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國民生命保險은 도리어 團體保險에 비해서 個人保險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즉 國民生命保險의 경우는 1970年度에 全體의 國民生命保險中 團體保險(職場保險)이 34.9%를 占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10. 生命保險의 地域別構造에 있어서는 民營生命保險은 國民生命保險이나 農協生命共濟에 비해서 지나치게 大都市에 集中되고 있으며 그것도 특히 團體保險에 많이 依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外務員의 分布는 都市中心으로 되어 있다.

이에 反해서 國民生命保險은 大都市보다도 地方中心이 되어 있다. 1972年度의 경우 서울과 釜山을 除外한 其他地域은 全國의 無慮 76.6%(保險料收入 基準)를 占하여 民營生命保險과 正反對의 分布를 보여주고 있다.

農協의 生命共濟는 農協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地方中心이며 1973年 9月末 現在 서울과 釜山을 除外한 其他地域이 全國의 94.7%(契約高 基準)란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11. 民營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에 있어서는 團體保險의 構成比가 漸進的으로 下落하고 있는데 反해서 個人保險의 構成比가 漸次로 增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團體保險의 比重이 壓倒的이라는 點과 個人保險의 內容에 있어서도 養老保險과 生存保險은 急速的으로 그의 構成比가 增加하여 온 反面 死亡保險은 대체로 踏步狀態를 걸어 왔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生命保險中 個人保險에 있어서는 生存保險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1970年度에 이 保險은 全體의 個人保險契約中 約 75.7%의 壓倒的 比重을 占하고 있다.

國民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에 있어서는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成人保險(4.4%)을 除外하고는 職場保險(34.9%), 教育保險(27.2%), 自立保險(33.5%)의 세 種目으로 國民生命保險의 契約高가 均配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組合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는 1970年末 現在로 볼 때 生活安定共濟가 契約高에서 全體의 81.9%를 占하고 있는데 反해서 어린이希望共濟는 全體의 18.1%를 차지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12. 損害保險의 機關別構造를 보면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構造는 保險料收入面에서 볼 때 韓國自動車保險株式會社(全體의 29.0%)를 除外하고 생각한다면 대체로 나머지 11個保險會社에게 11.9%—3.0%사이에서 均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韓國自動車와 東洋火災, 安國火災海上 세 會社의 合計額은 全體의 48.2%를 占하여 損害保險市場의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다.

組合保險의 機關別構造는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農業協同組合은 全體의 54.2%를 占하여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水產業協同組合으로서 43.1%, 韓國海運組合은 不過 全體의 2.7%를 占하여 가장 微微한 比重을 가지고 있다.

13. 損害保險市場의 地域別構造는 火災保險의 경우 地方보다도 서울特別市나 釜山直轄市와 같은 大都市에 지나치게 偏重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即 契約件數를 基準으로 하는 경우 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는 都合 全國의 53.2%를 保有하여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海上保險중 積荷保險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積荷保險의 保險料收入을 基準으로 할 때 輸出은 全體의 11.7%, 輸入은 77.4%, 統計上不一致가 10.9%로 構成되어 輸入이 輸出에 비해서 壓倒的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輸入중에서도 日本地域으로 부터의 輸入(25.8%)이 가장 크고 東部「아메리카」(17.0%), 「유럽」地域(14.9%), 西部「아메리카」(7.9%), 東南亞細亞(5.8%)의 順位로 되어 있다. 輸出에서는 日本에 대한 輸出(全體의 3.3%)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유럽」地域에 대한 輸出(3.1%)등이며 輸出로부터의 積荷保險料收入은 最高 3.3%—0.1% 사이에 分散되어 있다.

輸出保險의 地域別構造는 保險金額을 基準으로 할 때 美國이 全體의 39.8%를 占하여 第1位이고, 日本은 24.1%, 香港은 23.0%, 西獨 3.9%의 順序로 되어 있다.

組合保險의 地域別構造를 살펴 보면 먼저 農協의 損害共濟의 경우 共濟料收入을 基準으로 볼 때 이는 農協의 生命共濟와는 달리 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의 兩大都市에 많이 集中되어 있고 이 以外의 其他地域에 적게 集中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즉 서울特別市

(서울, 서울牛乳, 農協中央會包含)는 全國의 69.0%를 占하고 있다. 그러나 農協中央會와 서울牛乳를 除外하고 생각한다면 서울特別市는 全國의 4.6%, 釜山은 7.4%를 占하여 都合 全國의 12.0%가 되어 農協의 生命共濟와 같이 地方中心이 된다.

韓國海運組合의 損害共濟는 大체로 큰 港口라고 볼 수 있는 釜山·木浦·忠武·仁川·濟州 등에 많이 偏在되어 있다. 同損害共濟는 釜山 42.2%, 木浦 17.5%, 서울 9.4%, 忠武 7.9%, 仁川 7.1%, 麗水 6.1%, 濟州 4.9%, 壘湖 1.6%, 群山 1.5%의 順位로 되어 있다.

14. 韓國도 損害保險의 種目別構造의 變化에 있어서는 世界各國의 一般的 傾向과 大체로 同一한 傾向을 걸고 있다.

火災保險과 海上保險은 그의 比重이 漸次的으로 下落하는데 反해서 特種保險은 그동안 非常ly 急速한 速度로 그의 比重이 增加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損害保險의 種目別構造는 外國과는 달리 어느程度 均衡을 維持하면서 發展하여 가는 安定된 段階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나라 火災保險에서는 火災保險, 月納火災保險, 分納火災保險의 세 種類를 火災保險만이 絶對的 比重을 占하고 있다.

海上保險은 積荷保險, 船舶保險, 運送保險이 세 種類中 1971年度에서 保險料收入基準으로 볼 때 積荷保險이 全體의 56.2%를 占하여 가장 크고 그 다음이 船舶保險의 40.2%, 運送保險의 3.6%의 順位로 되어 있다.

自動車保險은 自動車責任保險, 自動車任意保險, 外貨表示保險의 세 種目으로 整理하여 볼 때 保險料收入을 基準으로 하는 경우 1971年度에 있어서 自動車責任保險은 全體의 86.9%, 自動車任意保險은 9.4%, 外貨表示保險의 3.7%의 順位로 되어 있다.

特種保險에는 保證保險, 機械保險, 責任賠償保險, 綜合保險, 長期貯蓄保險, 其他 等이 있으며 이를 1971年度에서 保險料收入을 中心으로 보면 우리나라 特種保險中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機械保險으로서 全體의 29.9%, 그 다음이 保證保險의 22.5%, 其他的 18.5%, 責任賠償保險의 14.9%, 長期貯蓄性保險의 8.4%, 綜合保險의 5.8%의 順位로 되어 있다.

輸出保險에는 一般輸出保險, 輸出金融保險, 輸出이음保險,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 등이 있으며 1970年까지는 中·長期延拂輸出保險과 委託販賣輸出保險은 아직 實績이 없고 一般輸出保險과 輸出金融保險, 輸出이음保險만이 實績을 올리고 있다. 1970年度에서 保險料收入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輸出保險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은 輸出어음保險으로서 全體의 65.9%, 그 다음이 輸出金融保險의 22.9%, 一般輸出保險이 11.2%의 順位로 되어 있다.

組合保險의 種目別構造를 살펴 보면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考察할 때 組合保險중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農協의 火災共濟로서 全組合保險의 44.9%, 그 다음은 水協의 漁船共濟로서 39.6%로 위의 農協의 火災共濟와 水協의 漁船共濟의 두 種目만으로서도 無慮 全體의 84.5%를 占하여 우리나라 組合保險의 二大 大宗品目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은 農協의 特殊家畜共濟의 8.1%, 韓國海運組合의 船舶共濟의 2.7%, 水協의 火災共濟의 2.6%, 韓國海運組合의 船客共濟의 2.1%의 順位로 되어 있다.

15.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機關別構造는 1971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總務處가 社會保險 全體의 77.0%를 占하여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保健社會部의 18.1%, 國防部의 2.4%의 順位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中心은 總務處가 되어 있다.

16. 社會保險의 業種別·階層別構造를 살펴 보면 먼저 公務員年金은 職種別構造에 있어서는 1973年度의 경우 一般職이 全體의 45.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教育公務員 32.9%, 雇傭員 21.7%, 判檢事 0.2%, 別定職 0.05%의 順位로 되어 있다.

公務員年金의 階層別構造(退職給與額 基準)를 20年勤績의 경우를 살펴 보면 1級 3號가 3,326,400원으로 全體의 37.1%, 2甲 3號는 2,432,000원으로 27.1%, 3甲 5號는 1,558,000원으로 17.4%, 4甲 8號는 894,000원으로 9.9%, 5甲 8號는 752,000원으로 8.5%의 順位로 되어 있다.

產災保險의 業種別構造는 製造業이 產災保險중 全體의 41.7%를 占하여 가장 크고 그 다음이 鐵業의 33.8%, 運輸通信業의 20.2%의 順位 등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產災保險은 製造業과 鐵業中心이다.

軍人保險의 階層別構造는 1966年度의 경우 將校는 全體의 59.4%를 占하여 가장 크고 士兵이 40.6%로서 將校가 士兵보다 많다.

醫療保險의 業種別構造를 보면 釜山青十字醫療組合이 全體의 52.8%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湖南肥料의 24.5%, 凤鳴礦業의 22.7%의 順位로 되어 있다.

醫療保險의 紙與對象構造는 1968年度의 경우 被保險者는 約 20%, 扶養家族은 約 80%의 比重을 占有하고 있다.

17.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種目別構造를 살펴 보면 1970年度의 경우 保險料收入을 中心으로 考察하여 볼 때 우리나라 社會保險중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公務員年金으로서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保險料收入總額 가운데에서 78.9%를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다음이 產災保險의 18.3%, 軍人保險의 2.5%, 醫療保險의 0.3%의 順位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社會保險은 아직까지도 公務員年金과 產災保險中心이다.

먼저 公務員年金의 種目別構造를 살펴 보면 1969年度의 경우 保險給與額을 中心으로 볼 때 退職給與가 全體의 90.9%를 占하여 가장 크고 그 다음이 遺族給與의 4.9%, 其他給與가 3.5%, 分娩給與가 0.7%의 順位로 되어 있다.

產災保險의 種目別構造는 19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保險給與額을 中心으로 살펴 볼 때 產災保險中 養老給與가 全體의 48.2%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遺族給與의 22.0%, 休業給與의 2.5% 障害給與의 18.8%, 葬祭給與의 7.6%의 順位로 되어 있다. 따라서 產災保險은 療養給與와 遺族給與, 休業給與中心이다.

醫療保險의 種目別構造는 1970年度에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은 療養給與로서 全體의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分娩給與의 0.9%, 葬祭給與의 0.4%의 順位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醫療保險은 療養給與center이다.